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文學碩士學位請求論文

조선후기 울산지역

‘솔인(率人)·솔인녀(率人女)’ 연구

-과부의 재혼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Solin(率人)·Solinnyeo(率人女)’ in

Ulsan Area in the Late Joseon Dynasty

- Focusing on Widow's Remarriage Case -

2020년

울산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한국문화학과

황진섭

조선후기 울산지역  
‘솔인(率人)·솔인녀(率人女)’ 연구  
-과부의 재혼 사례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이종서

이 논문을 文學碩士學位論文으로 제출함

2020년 12월

울산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한국문화학과  
황진섭

黃眞變의 文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 김우현 (印)

審査委員 이동성현 (印)

審査委員 이종서 (印)

울산대학교 대학원

2020년 12월

# 《목 차》

1. 서론	1
2. 『울산부호적대장』에서 보이는 ‘솔인(率人)’의 존재 양상	6
1) ‘솔인’의 분석 기준과 방법	6
2) 18세기 중반 이전 ‘솔인’과 그 성격	7
(1) 남성 솔인	7
(2) 여성 솔인	10
3) 18세기 중반 이후 ‘솔인’과 그 성격	14
(1) 남성 솔인	14
(2) 여성 솔인	16
3. ‘솔인녀(率人女)’의 성격과 가내 위상	18
1) ‘솔인녀’의 성격과 재혼 과부의 연관성	18
2) ‘솔인녀’의 표기와 가내 위상	23
4. 조선후기 울산지역 평민계층의 재혼 관행과 그 변화	27
1) ‘솔인·솔인녀’의 주요 신분계층과 그 계층의 재혼 양상	27
2) 여성 중심 재혼가정의 소멸	30
3) 평민층의 관행 유지와 양반층의 금기 의식 성장	32
5. 결론	35
《참고문헌》	37
ABSTRACT	39

## 《표 목차》

<표-1>	1672~1792년 ‘술인’의 전체 인원수와 시기별 분포	6
<표-2>	1672~1735년 시기별·면별 남성 술인의 인원분포	8
<표-3>	18세기 중반 이전 남성 술인의 성격	8
<표-4>	1672~1735년 시기별·면별 여성 술인의 인원분포	11
<표-5>	18세기 중반 이전 여성 술인의 성격	11
<표-6>	1753~1810년 시기별·면별 남성 술인의 인원분포	14
<표-7>	18세기 중반 이후 남성 술인의 성격	15
<표-8>	1753~1810년 시기별·면별 여성 술인인 인원분포	16
<표-9>	18세기 중반 이후 여성 술인의 성격	17
<표-10>	‘술인녀’의 시기별·면별 인원수	18
<표-11>	1753~1810년 연도별 최연소 과부의 연령대	22
<표-12>	아버지와 ‘술인녀’의 생존 여부에 따른 전처 자식의 외조 기재 방식	26
<표-13>	호주의 신분·지역별 ‘술인·술인녀’의 분포 비율	27
<표-14>	홀아비와 ‘술인·술인녀’의 연령별 분포	29
<표-15>	1609~1810년 연도별 ‘의자녀’ 인원수	30
<표-16>	1609년~1810년 ‘후처’ 인원수	32

## 《그림 목차》

<그림-1>	호주의 신분·지역별 ‘술인·술인녀’의 분포 비율 그래프	28
<그림-2>	홀아비와 ‘술인·술인녀’의 연령별 분포 그래프	29

## 국 문 요 약

# 조선후기 울산지역 ‘솔인(率人)·솔인녀(率人女)’ 연구 -과부의 재혼 사례를 중심으로-

황진섭

조선 사회에 영향을 미친 성리학은 과부들의 수절을 중요시했다. 성종은 과부들이 재혼하면 자손들이 관직을 받지 못하는 ‘재혼제한법’을 제정했다. ‘재혼제한법’은 연산군 때 다시 한 번 논의가 되었다. 연산군은 재혼 허가를 요청하는 상소에도 선왕이 결정한 일은 고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법을 개정하지 않았다.

사회의 상위 신분 계층이 가지기 시작한 과부의 재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시기가 지날수록 하위 신분 계층으로 확대되었다. 평민들이 양반들의 사상과 행동을 모방하면서 과부의 재혼을 금기시하는 풍속이 사회 전반에 정착해나갔다. 하지만 평민 과부는 다양한 이유로 재혼을 했었다. 자신이 먹고살기 위해서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새로운 남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과부의 재혼에 대한 초기 연구는 조선전기에 있었던 ‘재혼제한법’의 입법화 과정과 『경국대전』 법조문의 해석을 통한 양반 과부의 재혼 실상을 파악하는 것에 주력했다. 평민 과부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초부터 진행되었다. 호적 전산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평민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전산화 사업이 진행 중인 『蔚山府戶籍大帳』에는 과부와 관련 있는 ‘솔인(率人)·솔인녀(率人女)’의 존재가 확인된다.

18세기 중반 이전의 남성 솔인은 예속·고용, 친족, 사실혼의 성격을 가졌다. 여성 솔인은 예속·고용, 이혼, 사실혼의 성격을 가졌다. 남성 솔인은 1672~1708년 사이에 확인되지만 그 이후부터 18세기 중반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여성 솔인은 1729년부터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점차 사실혼 관계에 집중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18세기 중반 이전 ‘솔인’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객식구(客食口)의 성격이 강하다. ‘솔인’이었던 사람이 장기적으로 호에 존속하는 사례는 전부 노비(奴婢)·고공(雇工)으로 전환하여 명확한 호의 구성원이 되었다. 반대로 호주(戶主) 또는 처(妻)의 친족이 ‘솔인’으로 전환되는 사례는 잠시 몸을 의탁하거나 조만간 호에서 독립하는 경우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솔인’ 중에 유개(流丐)가 포함되어 있고, 후에 여성 솔인이 구활비로 전환되는 사례는 호주 또는 처와 ‘솔인’이 서로 면식이 없는 관계라는 점을 알려준다. 따라서 ‘솔인’은 호의 구성원으로 적합하지 않는 인물을 나타냈을 가능성이 높다.

18세기 중반 이후의 남성 솔인은 친족과 사실혼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18세기 중반 이전과 비교하면 사실혼의 관계에 사용된 남성 솔인이 증가한 특징을 보인다. 여성 솔인은 18세기 중반부터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며, 대부분 사실혼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남성 솔인은 1792년, 여성 솔인은 1789년 이후로 호적대장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남성 솔인의 소멸은 호주가 남성으로 기재되기를 선호한 정부의 노력으로 인한 결과로 생각되며, 여성 솔인의 소멸은 ‘솔인녀’에게 그 역할을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술인녀’는 1753년부터 확인된다. 여성 술인과 함께 수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성 술인과 ‘술인녀’는 서로 동일한 성격을 가졌다. 여성 술인이 18세기 후반 이후로 소멸되는 것과 달리 ‘술인녀’는 그 이후에도 일정한 수를 유지했다. 이는 여성 술인과 ‘술인녀’가 병행되어 사용된 시기를 지나 ‘술인녀’만 사용하도록 하는 원칙이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실혼 관계로 기재된 ‘술인녀’는 재혼한 과부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술인녀’와 ‘의자녀’가 서로 친모의 관계로서 같은 호에 존재하며, ‘과부 호주와 남성 술인’ 호가 ‘홀아비 호주와 술인녀’로 전환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부는 재혼을 하면 처가 아닌 ‘술인녀’로 기재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술인녀’가 처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 처로 기재된다는 사실은 과부의 재혼이 정식 혼인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가진다.

‘술인녀’가 처로 전환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재혼한 과부가 ‘술인녀’로 존속하는 기간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술인녀’와 첩이 서로 전환되는 사례를 통해 그 이유를 유추해볼 수 있다. 첩은 정식 아내로 인정받지 못했다. 재혼 과부가 첩과 같은 범주에 속했다는 것은 정식 아내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보다 낮은 대우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술인녀’는 전처 자식의 외조를 자신의 친부로 기재해 자신이 처의 위치에 있음을 표현했으며, ‘술인녀’가 생존해있을 때 그러한 경향이 높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해 준다.

‘술인·술인녀’는 중인 이하 신분층 특히, 평민 계층에서 압도적으로 사용되었다. 호적 작성의 주도층은 평민 재혼 과부를 ‘술인녀’로 기재한 것이다. ‘술인녀’가 평민층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살펴보면, 평민 남성은 60대에 재혼하는 인원이 가장 많았고 여성은 40대 초반이 가장 많았다. 이는 남성은 조세 수취와 역의 징발 대상으로 호주인 상태로 남아있어 노년에도 재혼이 필요하지만 여성은 장성한 아들의 호에서 어머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차이점으로 보인다.

‘술인·술인녀’는 재혼가정의 구성원의 변화도 보여준다. 시기가 지날수록 의자녀 기재와 술인녀의 친족들이 재혼가정에서 사라지는 현상에 주목하여 남성 중심 사회를 지향하는 관행의 변화를 확인했다. 울산지역 평민 계층에도 부계 중심 사회의 성리학적 윤리관이 침투한 것이다.

성리학적 윤리관은 울산지역 양반층에도 변화를 주었다. ‘술인·술인녀’라고 호적에 작성하는 주도층은 양반층이다. 그들은 정식 아내로 인정되는 ‘후처’를 소멸시키고 ‘술인녀’를 기재하여 재혼을 부도덕하게 여기는 관념을 호적대장에 반영하고자 했다. ‘술인녀’는 평민들이 정조의식을 가지게 만드는 계몽을 위해, 자신들은 정조의식을 가지게 보이게끔 선전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다. 이러한 양반층의 행동에도 평민층은 지속적으로 활발한 재혼 관행을 유지한 것으로 보아 19세기 초에는 아직 정조의식의 침투가 사회 전반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술인·술인녀’는 울산지역에서 성리학적 윤리관이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단서라고 말할 수 있다. 호적에는 당시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작성 주도층의 관념이 담겨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통계 수치를 활용한 1차원적인 관점에서 더 나아가 변화의 맥락을 살펴보고 고차원적인 관점이 요구될 것이다.

주요어 : 과부, 객식구, 성리학, 술인, 술인녀, 여성 중심 가족, 울산부호적대장, 의자녀, 재혼, 정조의식, 조선후기, 평민, 후처

## 1. 서론

조선 사회에 영향을 미친 성리학은 과부들의 수절을 중요시했다. 성종은 과부들이 재혼하면 자손들이 관직을 받지 못하는 ‘재혼제한법’을 제정했다.<sup>1)</sup> 당시에는 사대부 과부들의 재혼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상 금지의 의미를 뜻했다.<sup>2)</sup>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다시 재혼을 허가해달라는 상소가 있었지만, 성종은 허락하지 않았다.<sup>3)</sup> 재혼제한법은 연산군 때 다시 한 번 논의가 되었다. 연산군은 재혼 허가를 요청하는 상소에도 선왕이 결정한 일은 고칠 수 없다는 의견을 따라 법을 개정하지 않았다.<sup>4)</sup> 그 이후로 법의 효력이 점차 강화되어 과부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sup>5)</sup>

사회의 상위 신분계층에서 가지기 시작했던 과부의 재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시기가 지날수록 하위 신분계층으로 확대되었다. 조선후기에는 성리학적 질서의 하향적 침투와 신분제의 해체 속에서 평민들의 양반 지향적 움직임이 일어났다.<sup>6)</sup> 평민들도 양반들의 사상과

- 1) 성종 8년(1477) 큰 논의를 거쳐 재혼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였고, 성종 16년(1485)에 공포된 『경국대전』에 성문화했다. 이 법은 재혼한 과부의 자식들이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고, 세 번 재혼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명부에 기록하게 하여 재혼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닌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형태의 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혼금지법’이 아닌 ‘재혼제한법’으로 칭했다. ; “...행실이 부정한 부녀 및 재가한 여자의 소생은 동반직과 서반직에 서용하지 못하되 증손 대에 이르러서야 이상의 각 관사 이외의 직임에 서용하는 것을 허락한다(...失行婦女及再嫁女之所生, 勿敍東西班職, 至曾孫方許以上各司外, 用之.)”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贓吏子及孫等]. ; “...사족(士族)의 부녀자로서 그릇된 행실을 한 자는 문안(文案)에 기록하고 이조·병조·사헌부·사간원에 공문을 보낸다(...士族婦女失行者, 錄案, 移文吏·兵曹·司憲府·司諫院.)” 『經國大典』 刑典 禁制 [土人敗常及犯贓].
- 2) 이종서는 재혼제한법을 통해서 성종이 사족에게 사실상 재혼을 금지시킨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이종서, 「‘진통적’ 계모관(繼母觀)의 형성과정과 그 의미」, 『역사와현실』 51, 한국역사연구회, 2004. 141쪽).
- 3) “지금 국가가 절의(節義)를 중하게 여겨 재가(再嫁)한 자의 자손은 과거(科擧)에 나아가기를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때문에 부녀(婦女)가 일찍 과부가 되기도 부모가 없어 혼자 있으면 사실이 아닌데도 악명(惡名)을 입는 자가 있습니다. 재가법(再嫁法)은 의당 너무 엄하지 않아야 합니다(今國家重節義, 再嫁者之子孫, 不許赴擧, 故婦女早寡, 無父母獨居, 有虛被惡名者. 再嫁之法. 宜勿甚嚴.)” 『成宗實錄』 134권, 성종 12년 10월 25일 병인. ; “장년(壯年)으로 아들이 있는 여자는 재가하지 않더라도 진실로 마땅하나, 만약에 나이가 어리고 아들이 없는 여자는 그 부모가 개가시키려고 한다면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判校李命崇曰: 年壯有子之女, 雖不再嫁, 固當矣. 若年幼無子之女, 父母強欲改嫁, 許聽何如)” 『成宗實錄』 158권, 성종 14년 9월 11일 신축.
- 4) “...청컨대 부녀의 나이 20세 이하로 자녀가 없이 홀어미가 된 자는 모두 개가(改嫁)를 허하여 살아가는 재미를 부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윤필상(尹弼商)이 의논드리기를, “《대전(大典)》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경솔히 고쳐서는 안 됩니다. 성종의 교훈이 쟁쟁하게 귀에 남아 있사오니, 신은 감히 천단(擅斷)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왕은 필상(弼商)의 의논에 따랐다(...請婦女年三十以下, 無子女爲孀者, 皆許改嫁, 以遂生生之計. ...尹弼商議: “《大典》所載, 不可輕改. 成宗之教, 洋洋盈耳, 臣不敢擅便.” ...從弼商議.)” 『燕山君日記』 28권, 연산 3년 12월 12일 기묘.
- 5) 본래 재혼제한법은 과부의 재혼을 제한하는 법이었으나, 중종대에 이르면 재혼하는 과부의 아버지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중종대 사헌부는 상소를 하나 올렸는데, 양재찰방(良才察訪) 정유(鄭裕)가 딸을 재혼시켰으니 풍교를 위해 그를 파직시켜야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재가(再嫁)한 외방의 사족(士族)의 딸을 뒤따라 추문(推問)하겠습니다. ...다만 절의(節義)는 풍교(風教)의 큰 법이고 큰 법이 무너지면 장래를 바로잡기 어려우니, 그 가장(家長)인 정유는 파직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外方士族之女再嫁者, 則隨後推問矣. ...但節義, 風教之大防. 大防一毀, 末流難救. 其家長鄭裕罷之何如)” 『中宗實錄』 64권, 중종 23년 윤10월 19일 정해.
- 6) 손병규, 「18·19세기 단성호적 가족복원을 통한 혼인·출산의 계층성 분석」, 『한국문화』 6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4, 48~49쪽. ; 김상조는 평민층이 본래 재혼제한법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양반층의 재혼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 평민층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를 유학적 이데올로기의 하향적 침투라고 표현하였다(김상조, 「조선후기 야담에 나타난 재가의 양상과 의미」, 『한문학논집』, 근연한문학회, 1986, 242쪽).

행동을 모방하면서 과부의 재혼을 금기시하는 풍속이 사회 전반에 정착해나갔다. 금단의 행위로 변질된 과부의 재혼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조선 정부는 1894년 과부의 재혼을 다시 허용했다.<sup>7)</sup>

하지만 위의 내용과는 다르게 평민 과부는 다양한 이유로 재혼을 했었다. 대다수의 평민 과부는 수절하기 위한 재물이 충분하지 않았다.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새로운 남편이 필요했던 것이다.<sup>8)</sup> 또한 과부는 강도나 강간의 범죄에서 자신들을 보호해줄 사람이 필요했다.<sup>9)</sup> 평민 과부의 재혼은 먹고 살기 위해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선시대의 과부의 재혼 대한 이야기를 서술할 수 있는 것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있기 때문이다. 과부의 재혼에 대한 연구는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다. 조선 전기의 과부 연구는 『조선왕조실록』과 『경국대전』을 이용하여 과부의 재혼 규제 논의와 입법화 과정, 법 제정 이후의 실태에 대해 관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연구자들은 재혼의 금지가 아니라 규제였으며, 재혼제한법이 사대부들에게만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sup>10)</sup>

7) 군국기무처의 개혁안에 과부의 재혼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과부가 재혼하는 것은 신분에 관계없이 자신의 의사대로 한다(“軍國機務處進議案: “…一, 寡女再嫁, 無論貴賤, 任其自由事. …” 竝允之.” 『高宗實錄』 31권, 고종 31년 6월 28일 계유).

8) 보통 양반 과부는 경제적인 기반을 가진 경우가 많았고 수절을 해야 자녀에게 시가(媵家)의 재산이 상속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 재혼을 선택하지 않았다(정지영, 『질서의 구축과 균열: 조선후기 호적과 여성들』, 서강대학교출판부, 2015, 296~297쪽). 그러나 평민 과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재혼을 선택해야만 했는데, 19세기 후반 조선의 모습을 담아낸 외국인의 기록에서 그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 선교사 샤를르 달레는 “평민에게는 재혼이 법률이나 관습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 …가난한 집에서는, 남자는 음식을 만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 필요에서, 여자는 굶어 죽지 않으려는 필요에서 이런 종류의 결혼을 하는 일이 꽤 흔하다(샤를르 달레 원작, 안응렬·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上)』, 한국교회사연구소, 1990, 196~197쪽).”라는 기록을 남겼다. 오스트리아 작가이자 여행가인 에른스트 폰 헤세 바르텍(이하 헤세-바르텍)은 그의 저서에 “…덧붙여 말하자면 하층계급에서는 재혼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궁한 상황에서는 법도 소용없는 것이다. 자신을 먹여 살리던 남편을 잃은 가난한 과부에게 두 번째 남편을 얻는다는 것은 굶어 죽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에른스트 폰 헤세 바르텍 원작, 정현규 역주, 『조선, 1894년 여름: 오스트리아인 헤세-바르텍의 여행기』, 책과함께, 2012, 209쪽).”라고 서술했다. 달레의 저서는 1874년에 출판되었고, 헤세-바르텍의 저서는 1894년의 조선의 모습을 담아내었다. 따라서 19세기 후반에도 평민 과부는 경제적인 이유로 재혼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9) 실록에 과부를 겁탈하는 범죄를 언급하는 기록이 남아있다. “…제용감 봉사 이관성(李觀聖)은 재물을 탐하고 청상과부를 겁탈하였으며, …(濟用奉事李觀聖, 利財劫孀, …)” 『英祖實錄』 60권, 영조 20년 11월 27일 경자; “김제(金堤) 사람 김상각(金相珪)이라는 자가 수절하는 과부 김씨(金氏)를 겁탈하려고 군수(郡守) 최보흥(崔普興)을 부추겨 김씨의 아버지를 가두고 장차 도둑을 다스리는 형벌을 가하려 하므로 김씨가 자살하였는데, …(金堤人金相珪者, 欲劫奪守節寡女金氏, 嚇郡守崔普興, 囚金氏之父, 而將加盜盜之刑, 金氏自殺, …)” 『英祖實錄』 81권, 영조 30년 4월 14일 계사.; 또한 과부의 겁탈을 다룬 재판의 기록도 존재한다. (『審理錄』 제29권, 정사년(1797) 2 경기, 풍덕(豐德) 김유봉(金有奉)의 옥사; 『審理錄』 제29권, 정사년(1797) 2 경기, 용인(龍仁) 박삼봉(朴三奉)의 옥사; 『審理錄』 제24권, 갑인년(1794) 1 강원도, 강릉(江陵) 김순태(金順太)의 옥사; 『審理錄』 제30권, 정사년(1797) 3 경상도, 안동(安東) 이석(李碩)의 옥사). 이러한 사료는 과부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취약했음을 말해준다.

10) 조선전기 과부의 재혼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상백, 「재가금지습속의 유래에 대한 연구」, 『조선문화사연구논고』, 을유문화사, 1948.; 김두현,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9.; 박남훈, 「조선전기의 재혼금지법과 실제」, 『한국의 사회와 역사』, 최재석 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91.; 이숙인, 「15세기 조선의 개가 논쟁」, 『동양철학』, 한국동양철학회, 2009.; 최윤진, 「조식·김주 무고사건과 재가녀소생 관직제한법」, 『전북사학』, 전북사학회, 2011.; 이남희, 「안동권씨성화보」를 통해 본 조선 초기 여성의 재가」, 『조선시대사학보』, 조선시대사학회, 2011.

조선 후기의 재혼 연구는 새로운 사료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문학작품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들은 작품 속 과부의 재혼에 대한 형상과 각 신분·계층에서의 인식 및 특징에 대해 주목했다.<sup>11)</sup> 그리고 호적을 이용한 연구도 주목되었다.<sup>12)</sup> 호적은 조세 수취의 목적을 가진 행정문서로 모든 신분층의 사람들을 기재했다. 따라서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호적을 이용한다면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밀접하게 관찰할 수 있다.

정지영은 『단성현호적대장(丹城縣戶籍大帳)』(이하 단성호적)으로 과부의 재혼을 설명하고자 했다. 17~18세기의 과부들을 양반, 양인 계층으로 분류했고, 재혼녀의 비율과 재혼의 사례 등을 확인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양반층의 과부들보다 양인층의 과부들의 재혼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조선 후기 사회에서 주자학적 이념이 양인의 사회에 침투하는 과정은 기존의 연구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다르게 매우 느린 속도로 이루어졌음을 설명했다.<sup>13)</sup>

김건태는 단성호적에서 신분·계층을 상층, 중층, 하층으로 분류하여 재혼을 분석했다. 상층의 남성들은 재혼 상대로 처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중·하층의 남성들은 과부를 재혼 상대로 맞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중·하층 계층에서는 과부의 재혼이 일반적이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sup>14)</sup>

연구자들은 호적을 이용하여 방대한 양의 표본을 획득하였고, 이를 통해 신분·계층별 과부의 재혼 실태를 수치화 할 수 있었다. 그 다음 수치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기초적인 통계 자료를 구축하여 당시의 문헌자료 및 기록과의 교차검증을 거쳐 신빙성 높은 연구결과를 도출해냈다. 결과적으로 호적을 이용한 연구는 신분별 재혼 비율, 재혼 부부의 나이 차이, 재혼 남녀의 연상·연하 비율, 재혼 남녀의 초혼경험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정보들은 후속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참고하는 기초적인 내용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정지영과 김건태 이후에 호적을 이용한 과부의 재혼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과부의 재혼에 대한 실태와 양상을 넘어서 당시의 관행과 흐름을 중심으로 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울산부호적대장(蔚山府戶籍大帳)』(이하 울산호적)에서 과부의 재혼에 대한 실태와 양상과 더불어 당시의 관행과 시대적 흐름을 확인해보겠다. 울산호적에서 ‘솔인(率人)’과 ‘솔인녀(率人女)’의 존재가 확인된다. ‘솔인·솔인녀’가 호주와 혼인관계에 있음을 밝히고<sup>15)</sup>, 과부와와의 연관성을 찾아보겠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조선후기 울산지역 평민

11) 김상조, 「조선후기 야담에 나타난 재가의 양상과 의미」, 『한문학논집』, 근연한문학회, 1986 ; 김기형, 「구비설화에 나타난 과부의 형상과 의미」, 『한국민속학』, 한국민속학회, 1996 ; 손정희, 「상녀재가형 야담 연구」, 『문화전통논집』,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6 ; 박정혜, 「「넉동어미 화전가」에 나타난 혼인 및 개가의식 연구」, 『새국어교육』 55, 한국국어교육회, 1998.

12) 호적을 다루는 연구가 진행되면서 족보와 호적을 같이 비교한 특정 양반 가문의 재혼에 관한 연구가 있다. 다만 이 연구들은 양반가의 통혼 성관, 지역 분포를 설명하는 연구로 재혼에 관한 내용은 일부이고, 남성을 중심으로 서술되었기 때문에 따로 각주에 편성했다. ; 권내현, 「조선후기 동성촌락 구성원의 통혼 양상-단성현 신등면 안동권씨 사례-」, 『한국사연구』 132, 2006. ; 이성임, 「조선 후기 동성촌락 구성원의 혼인관계 -단성현 범물야면 상산김씨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32, 고려사학회, 2008.

13) 정지영, 「조선후기 과부의 수절과 재혼: 『경상도단성현호적대장』에서 찾은 과부들의 삶」, 『고문서연구』, 한국고문서학회, 2000.

14) 김건태, 「18세기 초혼과 재혼의 사회사: 단성호적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1, 한국역사연구회, 2004.

15) ‘솔인녀’는 호주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솔인녀에 대한 언급은 이

계층의 재혼 관행과 그 변화를 관찰할 것이다.<sup>16)</sup>

연구의 중심 자료는 울산호적이다. 울산호적은 현재 전산화가 진행 중이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다.<sup>17)</sup> 교차검증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법전과 중앙정부의 사료도 살펴보겠다. 이러한 관찰사료는 주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한국고전종합D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다.<sup>18)</sup> 시기는 17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까지 설정했고, 지역은 울산 내 모든 면을 대상으로 했다.<sup>19)</sup>

2장은 ‘술인’의 인원수와 성격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1절은 술인의 전체 인원수와 성격을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2절과 3절은 18세기 중반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서술할 것이다. 그리고 술인의 성별도 구별하여 성별마다 술인의 특징과 차이점을 비교할 것이다.

3장은 ‘술인녀’의 성격과 가내 위상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술인녀’가 여성 술인과 동일

준구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는 『울산군도한호적표(蔚山郡屠汗戶籍表)』에서 처(妻)가 술인녀로 표기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처가 술인녀로 표기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이준구, 「대한제국기 도한의 호구 양상과 사회, 경제적 처지」, 『대구사학』, 대구사학회, 2008, 202쪽).

16) 신분계층을 한정할 이유는 술인녀가 평민계층에서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3장에서 서술할 것이다.

17) 현재 울산부 호적의 전산화 된 정보는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http://kyudb.snu.ac.kr/main.do>).

18)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19) 본 연구에서 참고한 울산호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면 연도	범서	농소	유포	웅촌	대현	부내		동면	청량	온양	내상	면 계
						상	하					
1609	동면, 서면, 남면, 북면, 언양현											5
1672	●	●	●		●	●					●	6
1684			●			●				●	●	4
1687									●	●		2
1699	●	●			●							3
1702				●								1
1705						●					●	2
1708						●					●	2
1714		●	●									2
1720					●				●			2
1726					●				●			2
1729	●	●	●									3
1735	●	●	●									3
1753	●	●	●									3
1759	●	●	●									3
1765	●	●	●	●	●	●		●	●	●	●	10
1768					●				●			2
1771				●		●	●	●		●	●	6
1774				●		●	●	●		●	●	6
1783					●				●			2
1786						●	●	●			●	4
1789						●	●	●			●	4
1792					●				●			2
1795				●	●							2
1801	●	●			●							3
1804	●	●										2
1810			●			●		●	●			4

한 성격을 가졌다고 설명한 뒤에 과부의 재혼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혀볼 것이다. 그리고 재혼한 과부가 기존보다 더 낮은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솔인녀’의 대응 방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4장은 2장과 3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조선 후기 울산지역 평민계층의 재혼 관행과 그 변화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솔인녀’와 혼인관계에 있는 호주의 신분이 대부분 평민임을 밝히고, 평민 계층에서의 재혼 양상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솔인녀’를 통해 재혼 관행과 그 변화를 주목하고 당시의 울산호적이 가지는 지역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 2. 『울산부호적대장』에서 보이는 ‘솔인(率人)’의 존재 양상

### 1) ‘솔인’의 분석 기준과 방법

조선 정부는 『경국대전』 예전(禮典)에 호구식을 규정하였는데<sup>20)</sup>, 이는 호주를 중심으로 호내 구성원의 관계를 설정하는 호적대장 기재양식을 제도화 한 것이다.<sup>21)</sup> 그러나 호적대장에서는 호구식에 규정된 인원 외에도 호주 또는 처의 방계가족도 포함되어 있었다. 실질적으로 호구는 호주가족, 호주 또는 처의 방계가족, 예속인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sup>22)</sup>

그러나 울산호적에서 확인되는 ‘솔인’은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솔인’은 ‘거느리고 있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어의 성격상 호주와의 혈연 또는 친족 관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호주의 가족 또는 방계가족으로 분류할 수 없다. 또한 울산호적에서 예속인은 노비와 고공으로 기재되고 있어 예속인 유형에 포함하기도 난해하다.

결국, ‘솔인’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단서를 얻거나, 호적에서의 솔인의 존재 양상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우선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솔인’의 전체 인원수와 시기별 분포를 통해 분석 기준을 설정하고 분석 방법을 설명하도록 할 것이다.

<표-1> 1672~1792년 ‘솔인’의 전체 인원수와 시기별 분포

단위: 명

구분	1672	1684	1687	1699	1702	1705	1708	1714	1720	1726	1729	1735
인원	62	18	1	1	0	12	9	0	0	0	4	14
면 수	6	4	2	3	1	2	2	2	2	2	3	3
구분	1753	1759	1765	1768	1771	1774	1783	1786	1789	1792	계	
인원	5	7	115	58	61	40	8	5	4	1	425명	
면 수	3	3	10	2	6	6	2	4	4	2	74개	

출전: 『蔚山府戶籍大帳』

‘솔인’은 1672년부터 1792년까지 12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나타났으며, 전체 인원수는 425명이다. 중간에 ‘솔인’이 확인되지 않는 시기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시기 분포는 1672년~1708년과 1729~1792년이다. 이를 통해 18세기 초반을 기준으로 그 전후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의 내용과 다르게 1753년 이전과 이후로 시기적 구분을 하려고 한다. 울산호적은 1753년부터 ‘솔인녀’가 확인되기 때문에 이 때부터 새로운 기재 원칙에 맞춰 작성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sup>23)</sup> ‘솔인녀’는 ‘솔인’에서 성별을 구분하여 기재

20) “戶某部某坊第幾里住某職姓名·年甲·本貫·四祖, 妻某氏·年甲·本貫·四祖, 率居子女某某·年甲, 奴婢雇工某某·年甲。” 『經國大典』 「禮典」 戶口式.

21) 김건태,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인구기재 양상 - 단성호적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45, 한국역사연구회, 2002, 207쪽.

22) 김건태, 위의 논문, 2002, 208쪽.

23) ‘솔인녀’가 1753년부터 호적대장에 나타났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1735년과 1753년에 잔재하는 울산호적이 없어 그 사이의 식년에서부터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1753년부터 솔인녀가 등장했다고 서술했다.

하는 것이다. ‘술인’의 시기적 구분은 변화의 양상이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18세기 중반’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술인이 ‘술인녀’로 전환되어 기재되는 이유나 과정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술인’은 모든 성별이 포함되었다. 1672~1708년까지는 남성 술인의 숫자가 많지만 1729년부터는 여성 술인의 숫자가 우세해진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술인’의 성비가 역전되는 현상이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호적대장에 기재되는 술인의 역할과 성격이 변화함에 따라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술인’의 ‘성별’도 분석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술인’의 분석 방법은 직접적인 단서와 간접적인 단서를 이용하는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적인 단서는 ‘술인’ 외에 호주와의 관계 또는 ‘술인’의 역할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뜻한다.

**A(1672년)** 戶營奴崔次男年肆拾貳辛未本慶州父營奴莫乃祖營奴仲伊曾祖營奴仲石外祖營奴貞良本慶州母營婢自隱介妻私婢分良年參拾貳辛巳本慶州父私奴大生祖私奴大男貳祖不知…率人妻同生私奴大善年貳拾癸巳加現己酉戶口相准<sup>24)</sup>

**B(1687년)** 第三戶良人李愛上年柒拾戊午本慶州父允生祖允同曾祖允石外祖金斤本金海…率人私奴卜立年肆拾貳丙戌率雇工明斤各戶移去率雇工私奴卜立妻召史年參拾貳丙申加現甲子戶口相准<sup>25)</sup>

A는 최차남(崔次男)의 호의 사례이다. 여기에서 술인 대선(大善)이 가현(加現)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대선에게는 술인 외에 처동생(妻同生)이라는 호칭이 기재되었다. 대선은 최차남의 처남이므로 처의 방계가족이다. B의 술인사노(率人私奴) 복립(卜立)은 이애상(李愛上)의 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때 이애상의 호에 여성 한 명이 가현했는데, 여성은 술고공사노(率雇工私奴) 복립의 아내로 기재되었다. 즉, 복립 자신은 술인으로 기재되었으나 그의 아내는 고공의 배우자로 기재된 것으로 복립은 고공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구성원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A와 B의 사례와 같이 ‘술인’ 외에 다른 호칭이나 용어가 함께 확인된다면 ‘술인’의 성격을 분석할 수 있다.

간접적인 방법은 ‘술인’의 직역이나 호내위치의 변화를 추적하는 방법이다. 호적대장은 3년마다 작성되었으므로, ‘술인’이 등장하는 식년이 있다면 해당 식년의 전후 호적대장의 동일한 호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때 ‘술인’으로 기재된 호내의 구성원이 다른 존재로 전환되어 기재되었거나, 다른 존재가 술인으로 기재되었다면 ‘술인’의 성격을 알 수 있게 된다. 간접적인 방법은 뒤에 자주 사용되었으므로 사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할 것이다.

## 2) 18세기 중반 이전 ‘술인’과 그 성격

### (1) 남성 술인

18세기 중반 이전인 1672~1735년까지의 ‘술인’은 119명 중 96명(약 81%)이 남성 술인이다. 남성 술인은 시기별 인원 분포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인원수 비교가 가능한 식년은 1672, 1684, 1702, 1705년의 내상면과 부내면이다.

24) 『蔚山府戶籍大帳』, 奎-14999-3, 112쪽.

25) 『蔚山府戶籍大帳』, 奎-14999-1, 208쪽.

<표-2> 1672~1735년 시기별·면별 남성 술인의 인원분포

단위: 명

면 연도	범서	농소	유포	웅촌	대현	부내		동면	청량	온양	내상	계
						상	하					
1672	0	0	0		0	4					55	59
1684			0			11				4	3	18
1687									0	1		1
1699	1	0			0							1
1702				0								0
1705						12					0	12
1708						9					0	9
1714		0	0									0
1720					0				0			0
1726					0				0			0
1729	0	0	0									0
1735	0	0	0									0

출전: 『蔚山府戶籍大帳』

비고: 빗금으로 채워진 부분은 현존하지 않는 면을 표시한 것임.

특히, 내상면은 1672년 55명에서 1684년 3명, 1705년과 1708년은 각 0명의 남성 술인이 확인된다. 17세기 후반 55명에서 18세기에 들어서면서 0명으로 감소한 것이다. 그리고 부내면은 1672년 4명, 1684년 11명, 1705년 12명, 1708년 9명이 확인된다. 내상면과 비교해봤을 때, 적은 수의 남성 술인이 확인되지만, 18세기 초까지 그 수를 유지하고 있다.

내상면과 부내면의 ‘술인’이 이러한 차이점을 보이는 이유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알 수 없다. 다만, 1672년의 범서, 농소, 유포, 대현면에서는 ‘술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술인’이 울산 전체적으로 약속된 호적대장 기재 원칙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술인’의 성격을 유추해본다면 시기별 남성 술인의 인원 분포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표-3> 18세기 중반 이전 남성 술인의 성격

단위: 명

구분	호주와 남성 술인의 관계				계	총인원
	예속·고용	친족	사실혼	불명		
1672	2	6	0	51	59	62
1684	0	2	1	15	18	18
1687	1	0	0	0	1	1
1699	0	0	0	1	1	1
1702	0	0	0	0	0	0
1705	1	1	1	5	8	10
1708	0	2	1	6	9	9
1714	0	0	0	0	0	0
1720	0	0	0	0	0	0
1726	0	0	0	0	0	0
1729	0	0	0	0	0	4
1735	0	0	0	0	0	14
계	4	9	2	78	96	119

출전: 『蔚山府戶籍大帳』

<표-3>는 호주와 18세기 중반 이전 남성 솔인의 관계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 남성 솔인 중 성격을 확인할 수 없는 인원을 불명으로 분류했다.<sup>26)</sup> 관계가 불명인 솔인의 수가 많다는 사실은 호에서의 ‘솔인’의 이탈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솔인’이 장기적으로 호에 존속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1672년 내상면의 솔인이 1684년에 솔인으로 존속하는 사례가 없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준다.

결과적으로 ‘솔인’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속·고용, 친족, 사실혼으로 분류된 18명의 남성 솔인을 분석해야 한다. 먼저, 예속·고용의 관계로 추정되는 솔인은 4명이다. 고공이 3명, 비(婢)의 배우자 1명으로 확인된다.

**C-1(1672)** 戶正兵金義善年肆拾癸酉本金海父定虜衛壽男祖正兵吾乙未曾祖正兵元春外祖正兵林碩本豐川妻良女金召史年參拾參庚辰本慶州父定虜衛昆邊祖守門將漢傑曾祖參奉赫根外祖主簿林莫山本蔚山率人奴石哲年貳拾壹壬辰加現己酉戶口相准<sup>27)</sup>

**C-2(1684)** 第三戶府案付主鎮步保金儀善年伍拾貳癸酉\_\_\_\_父定虜衛守男祖正兵吾乙未曾祖正兵元春外祖正兵任石本豐川妻良女金召史年肆拾伍庚辰本慶州父定虜衛\_邊祖守門將汗乞曾祖參奉迪斤外祖通政大夫林莫山本蔚山率子斗貞年捌丁巳率女大召史年拾\_\_子率女非今年貳癸亥加現率雇工奴金石鐵年參拾參壬辰父正兵未叱男辛酉戶口相准<sup>28)</sup>

C-1(1672)의 김의선(金義善)의 호에서 솔인 석철(石哲)은 C-2(1684)에서 고공으로 나타난다. 1672년의 솔인 석철이 1684년에는 호주와 관계가 명확한 상태로 호에 존속하고 있어, 1672년의 석철은 김의선의 호에서 고공의 역할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솔인이 친족으로 확인되는 유형이다. 인원은 11명으로 친족으로 확신 또는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솔인의 전후 호칭이 친족용어로 기재되어 있거나 사조정보가 호주 또는 처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D-1(1672)** 戶正兵鄭玉善年肆拾貳辛未本迎日父正兵仁詳祖正兵碧富曾祖幼學元外祖正兵鄭億本東萊妻良女許召史年肆拾癸酉本金海父正兵忠己祖嘉善大夫沙同曾祖參奉仲立外祖正兵李希男本慶州率母良女召史今故率女子自隱春年拾伍戌戌率女子自隱分率子云星率正兵吳莫福等參口今故率人正兵許命吉年參拾伍戌寅...<sup>29)</sup>

**D-2(1684)** 第二戶府案付主鎮保兵許命吉年伍拾柒戌辰本金海父正兵春己祖嘉善大夫沙同曾祖參奉中立外祖正兵李希男本慶州...<sup>30)</sup>

**E-1(1705)** 第三戶貢生朴世儉年伍拾丙申本密陽父納粟通政大夫立詳祖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永元曾祖宣武原從功臣水江外祖學生金得南本金海妻良女李召史年伍拾參癸巳本慶州父納粟通政大夫李逸祖學生起雲曾祖折衝將軍守外祖正兵崔春守本慶州...妻五寸叔寺奴南得年陸拾貳丁亥...<sup>31)</sup>

**E-2(1708)** 第三戶朴世儉故代子勳節校尉守訓鍊院判官朴枝益年貳拾己巳本密陽父業武世儉祖納粟通政大夫立祥曾祖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永元外祖納粟通政大夫李鎰本慶州率母李召史年伍拾陸癸巳妻皇甫召史年貳拾捌辛酉本永川父納粟通政大夫甫英祖學生甫鎰曾祖納粟通政大夫碩外祖秉節校尉龍驤衛副司果鄭希元本慶州率人黃南得年陸拾伍甲申...<sup>32)</sup>

26) 불명은 솔인의 독립, 호주 및 솔인 누적, 사망, 이거, 도망, 추정 불가를 뜻한다.

27) 『蔚山府戶籍大帳』,奎-14999-3, 133쪽.

28) 『蔚山府戶籍大帳』,奎-14990, 225쪽.

29) 『蔚山府戶籍大帳』,奎-14999-3, 137쪽.

30) 『蔚山府戶籍大帳』,奎-14990, 210쪽.

31) 『蔚山府戶籍大帳』,奎-14998, 63쪽.

D-1(1672)에서 정옥선(鄭玉善)의 호에 솔인 허명길(許命吉)이 기재되어 있다. D-2에서는 허명길이 독립호를 이루고 있다. 허명길의 사조정보를 살펴보면, D-1의 정옥선의 아내 허소사(許召史)의 사조정보와 일치한다. 허명길과 허소사가 남매이며, 허명길은 처의 방계가족(처남)으로서 호의 구성원이 된 것이다.

E-1(1705)에서 박세검(朴世儉)의 호에 그의 아내 이소사(李召史)의 오촌숙(五寸叔) 남득(南得)이 기재되어 있다. E-2(1708)에서 박세검의 호를 살펴보면 솔인 황남득(黃南得)이 호의 구성원으로 기재되었다. 남득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박세검의 호에서 한 명만 존재하기 때문에, 1705년 오촌숙 남득과 1708년 솔인 황남득은 동일인물로 봐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남득은 처의 친족으로서 기재된 것이다. 이와 같이 D와 E의 사례를 통해 ‘솔인’은 호주 또는 처의 친족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사실혼은 3건의 사례가 확인된다. 이러한 사례들은 호주가 재혼을 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재혼 상대를 배우자의 호칭 대신 ‘솔인’으로 기재한 형태를 말한다. 사실혼이라고 정의하는 이유는 당시에 재혼임을 확실히 알려주고 재혼 가정의 아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후처(後妻)”가 호적대장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F(1684) 第五陞戶獨女劉承春年肆拾柒戊寅本東萊父正兵承男祖正兵生曾祖正兵德上外祖不知率人驛保崔春敬年參拾柒戊子本慶州父正兵士元祖正兵仁男曾祖通政大夫命元外祖正兵鄭承上本東萊率子御營保吳必成年拾伍庚戌戶口准<sup>33)</sup>

G(1705) 第五戶官婢海棠年參拾參癸丑本慶州父官奴海文祖私奴千輝二祖不知母官婢月仙率人小童房下典權於叱山年參拾伍辛亥今加現等壬午戶口相准<sup>34)</sup>

H(1708) 第五戶寡女私婢己花年肆拾己酉本蔚山父私奴金守元祖奉伊曾祖仇只外祖崔金伊本蔚山母私婢正分上典京居幼學李東真率人禁衛營募軍李枝芳年貳拾伍甲子加現等乙酉戶口相准<sup>35)</sup>

F, G, H는 사실혼 관계로 추정되는 남성 솔인의 사례를 나열한 것이다. F에서는 사실혼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2가지가 있는데, 호적에서 ‘솔인’의 기재순서와 사조정보 기재 여부다. 호구식에 따르면 호의 구성원 기재순서는 호주, 배우자, 자녀, 노비·고공이다. F의 솔인 최춘경(崔春敬)은 과부로서 호주로 기재된 유승춘(劉承春)과 유승춘의 자녀 오필성(吳必成) 사이에 기재되었다. 즉, 호주의 배우자 자리에 위치한 것이다. 또한 『경국대전』 호구식에서는 호주와 배우자의 사조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에서 솔인 최춘경은 자신의 사조정보를 기재했다. 이러한 2가지의 근거로 인해 최춘경은 유승춘의 배우자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G와 H는 사조정보를 기재하고 있지 않지만, F와 동일한 형태의 호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남편이 부재한 독녀호에 새로운 남성이 추가되는 상황은 사실혼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2) 여성 솔인

18세기 중반 이전의 여성 솔인은 1672년에 3명, 1705년에 1명, 1729년에 4명, 1735년에 14명으로 전체 솔인 119명 중 22명(19%)이 확인된다. 남성 솔인과 비교하여 18세기 초

32) 『蔚山府戶籍大帳』,奎-14985, 95쪽.

33) 『蔚山府戶籍大帳』,奎-14999-5, 100쪽.

34) 『蔚山府戶籍大帳』,奎-14998, 28쪽.

35) 『蔚山府戶籍大帳』,奎-14985, 49쪽.

무렵까지 인원수가 많지 않다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표-4> 1672~1735년 시기별·면별 여성 솔인의 인원분포

단위: 명

면 연도	범서	농소	유포	응촌	대현	부내		동면	청량	온양	내상	계
						상	하					
1672	0	0	0		0	0					3	3
1684			0			0				0	0	0
1687									0	0		0
1699	0	0			0							0
1702				0								0
1705						1					0	1
1708						0					0	0
1714		0	0									0
1720					0				0			0
1726					0				0			0
1729	4	0	0									4
1735	14	0	0									14

출전: 『蔚山府戶籍大帳』

비고: 빗금으로 채워진 부분은 현존하지 않는 면을 표시한 것임.

<표-4>는 시기·면별 여성 솔인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1729년부터 범서면에서 여성 솔인이 확인되는 것이다. 1699년에 여성 솔인의 수가 0명이었던 범서면에서 1729년에 여성 솔인이 기재된 점은 30년이라는 기간 사이에 범서면의 호적대장 기재 원칙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남성 솔인과 마찬가지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변화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찾아낼 수 없다. 하지만 여성 솔인의 성격 변화를 추적해본다면 그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표-5> 18세기 중반 이전 여성 솔인의 성격

단위: 명

구분	호주와 솔인의 관계				계	총인원
	예속·고용	사실혼	이혼	불명		
1672	2	0	0	1	3	62
1684	0	0	0	0	0	18
1687	0	0	0	0	0	1
1699	0	0	0	0	0	1
1702	0	0	0	0	0	0
1705	0	0	1	0	1	10
1708	0	0	0	0	0	9
1714	0	0	0	0	0	0
1720	0	0	0	0	0	0
1726	0	0	0	0	0	0
1729	0	1	0	3	4	4
1735	0	4	1	9	14	14
계	2	5	2	13	22	119

출전: 『蔚山府戶籍大帳』

18세기 중반 이전의 여성 솔인은 호주와의 관계를 예속·고용, 사실혼, 이혼, 불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속·고용, 사실혼, 불명은 남성 솔인과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친족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없고 이혼이라는 새로운 관계가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예속·고용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2건으로 구활비(救活婢), 노(奴)의 배우자로 확인된다. 개별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I-1(1672) 戶正兵崔繼福年肆拾柒丙寅本慶州父正兵守祖正兵慶芳曾祖正兵敬宗外祖正兵金應貞本金海…率人婢明月年拾肆己亥率雇工私奴談音沙里年參拾癸未等參口加現己酉戶口相准<sup>36)</sup>

I-2(1684) 第三戶故-----年參拾捌丁亥本密陽父定虜衛己立祖訓鍊院奉事承緒曾祖正兵起南外祖定虜衛梁得龍本南原率女愛春年--未率女愛-----救活婢明月年貳拾陸己亥…<sup>37)</sup>

J-1(1672) 戶營奴朴石乙伊年伍拾肆己未本蔚山父正兵大生祖正兵宗澤曾祖正兵銀宅外祖營奴福萬本密陽母營婢苒叱春…買得奴忠先年貳拾癸巳率人女婢自隱作只年拾捌乙未貳口加現己酉戶口相准<sup>38)</sup>

J-2(1684) 第四戶老營奴朴石乙伊年陸拾陸己未本蔚山父正兵大生祖正兵宗擇曾祖正兵銀特外祖營奴卜萬本密陽…率奴忠先年參拾壹甲午奴良妻自隱作年參拾乙未父禦營軍崔先龍同婢一所生…<sup>39)</sup>

I-1(1672년)의 최계남(崔繼福)의 호에서 명월(明月)은 솔인으로 기재되었으나 I-2(1684년)에서 구활비로 전환되어 나타난다. J-1(1672)의 박석을이(朴石乙伊)의 호에서 솔인 자은 작지(自隱作只)는 J-1(1684)에서 노의 양인 배우자로 전환되었다. 이처럼 18세기 중반 이전의 여성 솔인도 예속·고용의 성격을 가졌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1672년 이후 다른 식년에서 같은 유형의 사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예속·고용의 성격을 가진 여성 솔인은 지속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혼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2건이 있다. 호주와 여성 솔인의 관계를 이혼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여성 솔인이 전처(前妻)의 위치에 있었던 흔적이 보이기 때문이다.<sup>40)</sup>

K-1(1705) 第四戶府案付水軍二人并保府軍官金完哲改名鏡泰年肆拾丙午本慶州父嘉善大夫春山祖正兵擇只曾祖正兵億石外祖正兵姜善業妻良女南召史年貳拾壹甲子本英陽…率人寡女白召史年參拾玖丁未率女草安年拾肆壬申率妹良女金召史年肆拾參癸卯…<sup>41)</sup>

K-2(1708) 第五戶府案付二人并保府軍官金鏡泰年肆拾參不諭肆拾伍庚子本慶州父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龍驤衛副司果春山祖正兵擇曾祖正兵億外祖正兵李禮男本密陽妻南召史年貳拾伍甲子本英陽…率寡女白召史今故率前妻女草安年拾柒壬申率妹召史年肆拾陸癸卯…<sup>42)</sup>

L-1(1729) 第一戶堀火來黃山道驛吏宋業昌年伍拾參丁巳本懷德父驛吏龍日祖驛吏南伊曾祖驛吏亂金外祖正兵金鶴只本金海妻金召史年伍拾肆丙辰本金海父正兵成光祖正自吾曾祖業武連伊外祖正兵白萬伊本大丘率是太年拾肆丙申率婦襄召史年貳拾參丁亥率子善太年拾貳戌戌…<sup>43)</sup>

L-2(1735) 第三戶黃山道驛吏宋業昌年伍拾玖丁巳本懷德父驛吏龍日祖南伊曾祖驛吏亂金外祖正兵鶴只本金海妻李召史年陸拾丙辰本熊川父通政天龍祖武學善男曾祖武學服信外祖通政金尙丁本金海率子善太年拾捌戌戌率女召史慶州南面仍浦里金德好戶去率子驛吏時太年參拾丙戌率婦襄召史年貳拾玖丁亥率孫女召史年肆壬子率人金召史年陸拾壹乙卯率孫女召史年肆壬子等五口今加…<sup>44)</sup>

36) 『蔚山府戶籍大帳』,奎-14998, 40쪽.

37) 『蔚山府戶籍大帳』,奎-14985, 53쪽.

38) 『蔚山府戶籍大帳』,奎-14999-3, 109쪽.

39) 『蔚山府戶籍大帳』,奎-14990, 140쪽.

40) 본 연구에서는 이혼에 대해 장병인, 『법과 풍속으로 본 조선 여성의 삶』, (주)휴머니스트, 2018.를 참고했다.

K-1(1705)의 김경태(金鏡泰)의 호에서 솔인 백소사(白召史)가 확인된다. K-2(1708)에서 백소사가 이 해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그런데 솔인 백소사가 사망하면서 1705년에 솔녀로 나타났던 초안(草案)이 1708년에 전처(前妻)의 자녀로 기재되었다. 초안의 변화와 백소사가 과부로 기재된 사실과 함께 살펴본다면, 백소사는 김경태의 전처일 가능성이 높다.

L-1(1729)에서 송업창(宋業昌)의 처는 김소사로 기재되어있다. 그런데 L-2(1735)에는 송업창의 처가 이소사로 확인된다. 대신 김소사와 비슷한 연령대의 솔인 김소사가 확인된다. 송업창의 처가 이소사로 바뀐 점은 전처인 김소사가 사망하여 ‘후처’인 이소사와 재혼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L-2에서 아들 시태(時太)와 며느리 배소사와 함께 2명의 손녀가 솔인 김소사와 함께 송업창의 호에 가현했다고 기재되었다. 이러한 정보로 바탕으로 다시 살펴본다면, 1729년 이후에 송업창은 김소사와 어떠한 이유로 이혼한 다음 아들 시태가 어머니를 모시고 독립했다가 1735년에 일시적으로 두 개의 호가 합쳐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실혼 관계는 5건이 있다. 앞에서 18세기 중반 이전의 남성 솔인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남성 솔인의 기재 순서와 사조정보 기재 여부를 사실혼으로 추정하는 단서로 제시했다. 여기서는 호주와 여성 솔인의 사실혼 관계가 공식적인 혼인관계로 전환되는 사례를 제시하여,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M-1(1729) 第一戶東伍別隊朴貴福年伍拾庚申本密陽父業武生立祖業武愁曾祖業武敏外祖學生鄭起上本東萊妻朴召史年肆拾肆丙寅父納粟通政大夫仁白祖納粟嘉善大夫永豪曾祖納折衝將軍末叱卜外祖軍功守門將安今分本金海…45)

M-2(1735) 第四戶府案付東伍別隊朴貴福年伍拾陸庚申本密陽父老職通政大夫生立祖業武愁曾祖業武敏外祖學生鄭起祥本東萊妻朴召史今故率母鄭召史今故率子主鎮軍聖才年貳拾丙申率女召史年拾丙午買得婢納德年貳拾丙申今加率人李召史年伍拾陸庚申今加等壬子戶口相准46)

M-3(1753) 第三戶東伍別隊朴貴福年陸拾肆庚午本密陽父通政生立祖業武連曾祖業武民外祖業武鄭己祥本東萊率子疏黃軍小斤老未不喻聖彬年拾捌丙辰婢納德年參拾捌丙申一所生奴尙白年拾柒丁巳二所生婢尙禮年捌丙寅等三口時居慶州率人李召史年柒拾肆庚申等庚午戶口相准47)

M-4(1759) 第七統一戶老人朴貴福年陸拾玖辛未本密陽父通政生立祖業武然曾祖業武敏外祖業武鄭起尙本東萊妻李姓年柒拾庚午本鶴城父學生春英祖率直郎天機曾祖折衝將軍行柔遠鎮兵馬僉節制使翰南外祖老職嘉善朴致發本蔚山率子疏黃軍聖彬年貳拾貳戊午率婦宋姓年貳拾伍乙卯率次女年捌壬申率婢納叱德丙子故一所生尙白甲戌逃亡二所生婢上禮年拾壹己巳等丙子戶口相准48)

위의 사례는 호주와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 솔인이 시간이 지나 공식적인 혼인관계로 인정받으면서 처로 전환되는 변화 양상을 담고 있다. M-1(1729)에서 호주 박귀복(朴貴福)의 배우자는 박소사(朴召史)로 확인된다. M-2(1735)에서 박소사가 사망하고 솔인 이소사(李召

41) 『蔚山府戶籍大帳』,奎-14998, 40쪽.

42) 『蔚山府戶籍大帳』,奎-14985, 53쪽.

43) 『蔚山府戶籍大帳』,奎-14983-2, 155쪽.

44) 『蔚山府戶籍大帳』,奎-15001, 294쪽.

45) 『蔚山府戶籍大帳』,奎-14983-2, 144쪽.

46) 『蔚山府戶籍大帳』,奎-15001, 297쪽.

47) 『蔚山府戶籍大帳』,奎-14992, 316쪽.

48) 『蔚山府戶籍大帳』,奎-14987, 263쪽.

史)가 새로 입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M-3(1753)에서 술인 이소사가 계속 남아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M-4(1759)에서 박귀복은 처 이성(李姓)과 함께 살고 있다. 1735~1753년까지 박귀복의 호에서 이씨 성을 가진 인물은 술인 이소사 밖에 없으므로, 처 이성과 술인 이소사는 동일인물로 봐도 될 것이다.<sup>49)</sup> 결과적으로 박귀복 호의 사례를 통해 호주의 배우자가 없는 호에 여성 술인이 구성원으로 기재된 형태는 사실혼 관계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18세기 중반 이전 ‘술인’의 자료를 종합해본다면 객식구(客食口)의 성격이 강하다. ‘술인’이 호에 존속하는 사례는 단기적인 사례 밖에 없었다. ‘술인’이었던 사람이 장기적으로 호에 존속하는 사례는 전부 노비·고공으로 전환하여 호주와 관계가 명확한 구성원이 되었다. 반대로 호주 또는 처의 친족이 ‘술인’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친족 중에 있는데, 이는 친족이 잠시 몸을 의탁하거나 조만간 호에서 독립하는 경우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술인 중에 유개(流丐)가 포함되어 있고,<sup>50)</sup> 여성 술인이 후에 구활비로 전환되는 사례가 있다.<sup>51)</sup> 유개는 떠돌아다니는 거지를 뜻하고, 구활비는 버려진 아이가 자신을 받아준 집안의 노비로 전환되는 경우로 호주 또는 처와 관계가 없는 인물이다.<sup>52)</sup> 이와 같이 ‘술인’의 출신과 변화를 살펴봤을 때, 사실혼 관계를 제외하면 ‘술인’으로 기재되는 인물은 호주 또는 처와 면식이 없는 타인이거나 잠시 몸을 의탁한 친족이다.<sup>53)</sup>

### 3) 18세기 중반 이후 ‘술인’과 그 성격

#### (1) 남성 술인

남성 술인은 18세기 중반 이후로 다시 호적대장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18세기 중반 이전에 내상면과 부내면에서 주로 기재되었지만, 1765년 이후부터는 다른 면에서도 남성 술인이 확인된다.

<표-6>을 보면, 1765년 이후로 남성 술인은 그 이전에 확인되지 않았던 농소, 유포, 웅

49) 1753년 술인 이소사(74세)와 1759년 처 이성의 나이 변화(70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호주 박귀복도 1735년(56세)과 1753년(64세)으로 나타나면서 나이의 변화가 박귀복과 이소사 둘 다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1735년에 박귀복과 이소사가 동갑으로 확인된다. 마지막 식년에서 박귀복과 이성의 나이 차이는 1살이다. 호적대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나이에 대한 오류가 종종 있었던 만큼 1살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술인 이소사와 처 이성을 다른 인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박귀복의 아들들도 1753년에 외조를 이춘영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춘영은 1759년 이성의 아버지로 확인되는데, 앞에서 확인했듯이 1753년에는 박귀복 호에 처 대신에 술인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술인 이소사와 처 이성은 동일인물로 봐야한다.

50) (1684) 第三戶 (불명) 文上曾祖文卜外祖水軍李長卜本慶州母良女長春 (불명) 外祖朴光澤率女苐叱春年拾壹甲寅 率人流丐良崔貴先年 (불명) 辛酉戶口相准

51) 각주 36, 37의 최계복 호의 명월 사례 참고.

52) 신해년(1671, 현종12) 정월 1일부터 7월 30일 이전까지의 사이에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기른 경우에는 양민이나 공천·사천을 막론하고 그 아이가 나중에 낳은 자식까지도 아울러 영구히 노비로 삼게 한다. 다만 15세까지로 한정하고, “自辛亥正月初一日至七月三十日以前, 收養遺棄兒, 勿論良民·公私賤, 并其後所生, 永作奴婢. 以十五歲爲限, …” 『典錄通考』禮典 下 惠恤 受教輯錄 [收養遺棄兒永作奴婢]. 1672년에 명월이 가현하고 1684년에 명월이 구활비로 기재되어 있다. 최계복은 앞의 법령에 따라 버려진 아이였던 명월을 거두어들이고 노비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최계복과 명월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며, 이 사례는 ‘술인’이 객식구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53) 단성호적에서도 ‘술인’의 존재가 확인된다. 그 중 성격을 알 수 있는 사례를 추려보면 친족, 상전이 동일인물인 노비들, 정배죄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울산호적에서 객식구로 추측하는 18세기 중반 이전 ‘술인’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촌, 대현, 청량면에서 확인된다. 이전에 일부 면에서만 사용되었던 ‘술인’의 기재 원칙이 이제는 울산 전체의 기재 원칙으로 정착했다고 추측된다.

<표-6> 1753~1810년 시기별·면별 남성 술인의 인원분포

단위: 명

면 연도	범서	농소	유포	웅촌	대현	부내		동면	청량	운양	내상	계
						상	하					
1753	0	0	0									0
1759	0	0	1									1
1765	1	0	1	1	0	4		1	5	4	0	17
1768					2				0			2
1771				3		1	1	0		2	3	10
1774				1		2	0	0		3	1	7
1783					2				0			2
1786						1	1	0			0	2
1789						0	1	0			0	1
1792					0				1			1
1795				0	0							0
1801	0	0			0							0
1804	0	0										0
1810			0			0		0	0			0

출전: 『蔚山府戶籍大帳』

비고: 빗금으로 채워진 부분은 현존하지 않는 면을 표시한 것임.

하지만 남성 술인은 1765년 이후로 그 인원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1792년 이후로는 호적대장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18세기 후반에 어떠한 이유로 인해 남성 술인을 더 이상 기재하지 않는 쪽으로 호적대장 기재 원칙이 변화한 것이다.

<표-7> 18세기 중반 이후 남성 술인의 성격

단위: 명

구분	호주와 술인의 관계				계	총인원
	예속·고용	친족	사실혼	불명		
1753	0	0	0	0	0	5
1759	0	1	0	0	1	7
1765	0	1	14	2	17	115
1768	0	0	2	0	2	58
1771	0	4	4	2	10	61
1774	0	5	0	2	7	40
1783	0	1	1	0	2	8
1786	0	0	2	0	2	4
1789	0	0	1	0	1	4
1792	0	0	1	0	1	1
계	0	12	25	6	43	303

출전: 『蔚山府戶籍大帳』

남성 술인은 총 303명 중 43명(약 14%)이다. 18세기 초 무렵부터 나타난 성비 역전의 현상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남성 술인의 성격은 그 이전보다 더 명

확해졌다. 불명이 43명 중에서 6명으로 약 14%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속·고용의 성격을 가진 남성 솔인은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으나, 친족은 일정하게 사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사실혼 성격을 가진 남성 솔인의 사례가 증가한 점이 주목된다. 앞에서는 남성 솔인의 기재순서와 사조정보 기재 여부를 통해서 사실혼 관계를 추측했었다. 여기서는 18세기 중반 이후의 사실혼 남성 솔인이 공식적인 혼인관계로 전환되는 사례를 소개하여 주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N-1(1765) 第二戶寡女金召史年參拾伍辛亥本金海父業武太主祖業武汝道曾祖業武戒札外祖業武嚴以宗本寧越率人金太才年肆拾丙午等壬午戶口相准<sup>54)</sup>

N-2(1768) 第一戶金召史代鄉廳有司金兌守年肆拾參丙午本金海父業武孝近祖業武士元曾祖宇成外祖黃自奉本昌原妻金召史年肆拾己酉本金海父業武太周祖汝道曾祖史庫參奉戒札外祖嚴進建本寧越等乙酉戶口相准<sup>55)</sup>

N-1(1765)은 과녀 김소사(金召史)의 호에 솔인 김태재(金太才)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 N-2(1768)에서 김태재가 김소사 대신 호주가 되고 김소사는 처로 전환되었다. 김태재와 김소사는 사실혼에서 공식적인 혼인관계로 인정받은 것이다.

N의 사례는 남성 솔인이 호주가 되고, 과부 호주가 처로 전환되는 변화의 과정을 담아냈다. 조선 정부는 호적대장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호주가 되기를 선호했다. 호적대장은 조세 수취를 하기 위한 명부였기 때문이다. 점차 호적대장에서 남성이 호주가 되는 호가 많아지면서 여성 호주와 남성 솔인이라는 호의 형태는 자연스럽게 도태되었다고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 (2) 여성 솔인

18세기 중반 이후의 여성 솔인은 그 이전에 비해 수가 급증했다. 18세기 초 무렵 범서면에서 확인되던 여성 솔인은 1765년 이후로 모든 면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표-8> 1753~1810년 시기별·면별 여성 솔인의 인원분포

단위: 명

면 연도	범서	농소	유포	웅촌	대현	부내		동면	청량	온양	내상	계
						상	하					
1753	4	1	0									5
1759	0	3	3									6
1765	2	5	1	8	8	8	0	54	7	4		98
1768					27			29				56
1771				24		12	4	1		2	7	51
1774				0		6	5	0		12	10	33
1783					2				4			6
1786						1	0	0			1	2
1789						2	1	0			0	3
1792					0				0			0

54) 『蔚山府戶籍大帳』, 奎-14991, 307쪽.

55) 『蔚山府戶籍大帳』, 奎-15003, 248쪽.

1795			0	0			0
1801	0	0		0			0
1804	0	0					0
1810			0		0	0	0

출전: 『蔚山府戶籍大帳』

비고: 빗금으로 채워진 부분은 현존하지 않는 면을 표시한 것임.

<표-8>에서 18세기 중반 이후의 여성 술인은 1765년에 동면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확인되고, 그 이후 남아있는 일부 면에서 수십 명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18세기 후반에 들어서면 인원수가 감소하여 1789년 이후로 호적대장에서 더 이상 쓰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여성 술인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표-9> 18세기 중반 이후 여성 술인의 성격

단위: 명

구분	호주와 술인의 관계				계	총인원
	사실혼	예속·고용	이혼	불명		
1753	2	0	0	3	5	5
1759	5	0	0	1	6	7
1765	89	0	0	9	98	115
1768	52	0	0	4	56	58
1771	48	0	0	3	51	61
1774	28	0	0	5	33	40
1783	6	0	0	0	6	8
1786	2	0	0	0	2	4
1789	0	0	0	3	3	4
1792	0	0	0	0	0	1
계	237	0	0	23	260	303

출전: 『蔚山府戶籍大帳』

18세기 중반 이후의 여성 술인은 사실혼의 관계가 다른 유형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1735년까지 범서면에서 확인된 사실혼 여성 술인을 1753년부터는 다른 면에서도 기재하기 시작했다. 여성 술인의 기재 원칙을 적용하는 면이 확대되면서 18세기 중반에 여성 술인 수가 급증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증명하듯 <표-9>에서 확인되는 대부분의 여성 술인은 사실혼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기재되었다.

결과적으로 ‘술인’은 18세기 초반을 기점으로 사실혼이라는 한 가지의 목적을 강하게 가지는 기재양식이 되어갔고, 이전과는 달리 남성보다 여성이 ‘술인’으로 더 많이 기재되었다. 울산호적의 작성 주도층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호적대장에 ‘술인’의 성별을 구별하여 기재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1753년부터 확인되는 ‘술인녀’는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물인 것이다.

### 3. ‘솔인녀(率人女)’의 성격과 가내 위상

#### 1) ‘솔인녀’의 성격과 재혼 과부의 연관성

앞에서 18세기 중반 전후의 ‘솔인’의 변화과정을 통해 ‘솔인녀’가 호적대장에 기재된 원인을 추론을 해봤다. ‘솔인녀’는 1753년부터 울산호적에서 나타났다.<sup>56)</sup> 기존의 ‘솔인’에서 성별을 구분한 솔인녀를 이용해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호적에 기재하기 시작했다.

<표-10> ‘솔인녀’의 시기별·면별 인원수

단위: 명

면 연도	범서	농소	유포	옹촌	대현	부내		동면	청량	운양	내상	계	여성 솔인
						상	하						
1753	6	4	0									10	5
1759	29	5	16									50	6
1765	6	5	20	60	48	57		3	72	88	29	388	98
1768					46				68			114	56
1771				43		34	18	4		62	35	196	51
1774				52		39	29	5		98	41	264	33
1783					124				82			206	6
1786						63	32	20			68	183	2
1789						65	33	34			66	198	3
1792					133				54			187	0
1795				36	130							166	0
1801	36	41			157							234	0
1804	13	74										87	0
1810			37			64		46	28			175	0
면 계	90	129	73	191	638	57 265 112		112	304	248	239	2,458	260

출전: 『蔚山府戶籍大帳』

비고: 솔여인(率女人), 솔인녀를 솔녀로 적은 경우도 포함했다.

솔인녀가 사망한 경우도 포함하였다(今故 또는 故).

<표-10>은 1753~1810년까지 ‘솔인녀’와 여성 솔인의 인원수를 보여준다. 사실혼 관계에서 정식 혼인으로 인정받는 그 순간까지는 호주의 배우자를 ‘솔인녀’나 ‘솔인’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중복 인원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2,458명과 260명의 수적 차이를 통해서 울산호적은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솔인녀’로 기재하는 쪽으로 변화되었다고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여성 솔인은 1774년 이후에는 한 자릿수로 급감하고, 1789년의 3명을 마지막으로 울산호적에서 소멸한다. 반면에 ‘솔인녀’는 1810년까지 꾸준히 기재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즉, 여성 솔인과 ‘솔인녀’가 18세기 후반까지는 같이 기재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18세기 후반까지는 두 개의 용어를 같이 기재하는 과도기의 시기로 해석할 수 있다.

56) ‘솔인녀’가 울산호적에서 정확히 언제부터 등장했는지 명확하게 밝힐 수 없다. 그와 관련된 문헌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1735년과 1753년 사이의 호적대장이 소실되어 18년의 기간이 공백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753년의 ‘솔인녀’ 인원수가 적은 수임을 감안해본다면 1753년에 가까운 시기에 등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A-1 1765 第三戶官奴金德興年參拾壹乙卯本金海父碩好祖宣略將軍汝元曾祖顯信校尉仁基外祖盧興柱本寧海率人女金召史年貳拾肆壬戌本慶州率母盧召史年柒拾參癸酉率妻父金正男年陸拾參癸未率妻娣斗見年貳拾捌戊午率妻娣妻召史年貳拾伍辛酉等壬午戶口相准者<sup>57)</sup>

A-2 1771 第五戶官奴金德興年參拾柒乙卯本金海父碩好祖宣略將軍汝元曾祖顯信校尉仁基外祖盧興柱本寧海率人女金召史年參拾壬戌本慶州率母盧召史年捌拾參己巳率子仇致年伍丁亥率子惡只年貳庚寅戊子戶口相准<sup>58)</sup>

B-1 1771 第一戶禁米保李貴太年肆拾參己酉本慶州父正兵萬千祖正兵時同曾祖正兵完白外祖正兵尹丁三本坡平率人女白召史年肆拾壹辛亥本昌寧率女召史年參己丑等戊子戶口相准<sup>59)</sup>

B-2 1774 第四戶禁米保李貴太年肆拾陸己酉本慶州父正兵萬天祖正兵時同曾祖完白外祖尹正三本坡平率人女白召史年肆拾肆辛亥率女召史年陸己丑等辛卯戶口相准<sup>60)</sup>

A-1(1765)의 김덕흥(金德興)호에는 솔인녀 김소사(金召史)가 존재한다. A-2(1771)에서 김소사가 솔인녀 대신 솔인으로 기재되었다. B-1(1771)의 이귀태(李貴太)의 호에는 솔인 백소사(白召史)가 존재한다. B-2(1774)에서 백소사는 솔인 대신 솔인녀로 기재되었다. 이처럼 여성 솔인과 ‘솔인녀’가 서로 전환될 수 있기에 그 둘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성격을 가진 여성 솔인과 ‘솔인녀’는 18세기 중반에 함께 기재되는 과도기를 거치고, 18세기 후반에는 완전히 ‘솔인녀’가 여성 솔인의 자리를 대체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솔인녀’의 성격은 여성 솔인과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솔인녀’가 재혼한 과부라는 사실과 가내 위상을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둔다.<sup>61)</sup>

먼저 ‘솔인녀’는 재혼을 기반으로 하는 사실혼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솔인녀’의 입호·출호와 호주의 환부 표기 소멸 및 기재가 관련이 있어, 남성의 재혼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sup>62)</sup> 사조정보가 기재되지 않는 ‘솔인녀’는 혼인경험의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그러

57) 『蔚山府戶籍大帳』, 奎-14982-1, 36쪽.

58) 『蔚山府戶籍大帳』, 奎-14981, 24쪽.

59) 『蔚山府戶籍大帳』, 奎-15006, 259쪽.

60) 『蔚山府戶籍大帳』, 奎-14978, 242쪽.

61) 본문에서 설명했듯이 18세기 중반 이후의 여성 솔인과 ‘솔인녀’는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금부터는 ‘솔인녀’를 말할 때 18세기 중반 이후의 여성 솔인과 ‘솔인녀’를 모두 포함해서 설명할 것이다.

62) 솔인녀의 입·출호와 호주의 환부 표기 소멸 및 기재의 연관성은 호적대상에서의 변화에 확인할 수 있다. 솔인녀와 동거 중인 호주의 환부 표기가 소멸되며, 솔인녀가 입호함과 동시에 환부 표기가 소멸되기도 한다. 그리고 솔인녀가 어떠한 사유로 출호하면 호주에게 환부 표기가 기재된다. 아래의 표는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모은 것이다.

순번	연도	면·리	호주 정보	처·솔인녀 정보	호내 변화
1	1771	내상면 남문내리 (南門內里)	영무군되(營巫軍牢) 환부(鰥夫) 박일덕(朴日德) 30세·임술(壬戌)	솔인녀(率人女) 정소사(鄭召史) 24세·무진(戊辰)	환부 기재 → 소멸
	1774	내상면 남문내리 (南門內里)	영무군되(營巫軍牢) 박일덕(朴日德) 33세·임술(壬戌)	솔인녀(率人女) 정소사(鄭召史) 27세·무진(戊辰)	
2	1771	내상면 서문내리 (西門內里)	병영군되(兵營軍牢) 환부(鰥夫) 박석매(朴石梅) 59세·계사(癸巳)	처(妻) 이소사(李召史) 사망(今故)	처 사망 및 환부 기재 → 솔인녀 입호(入戶) 및 환부 소멸
	1774	내상면	병영군되(兵營軍牢)	솔인녀(率人女)	

나 울산호적은 사조정보를 통한 추적 외에도 ‘솔인녀’가 재혼 과부임을 알려주는 흔적을 남겨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관점을 통해서 ‘솔인녀’가 과부임을 밝힐 것이다.

‘의자녀’는 자신의 피로 이어지지 않은 자녀를 뜻한다. 호주가 남성인 호에 ‘의자녀’가 존재한다면, 재혼한 과부가 데려온 자식을 가리킨다. 이처럼 ‘의자녀’의 존재 여부는 여성의 재혼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 ‘솔인녀’와 ‘의자녀’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확인한다면, ‘솔인녀’를 재혼한 과부라고 바라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C-1 1771 第五戶巡軍鰥夫金太三年參拾玖癸丑本金海父辛先祖南立二祖不知妻李沙進今故率女太進年拾貳庚辰等戊子戶口相准<sup>63)</sup>

C-2 1774 第三戶巡營軍鰥夫金太三年伍拾貳癸丑本金海父率元祖南立二祖不知率女太辰年拾伍庚辰率人女金自隱今年肆拾乙卯今加率義子李自隱太年拾柒戊寅今加等辛卯戶口相准<sup>64)</sup>

D-1 1753 第三戶水營上道物騰軍崔命山年伍拾陸己卯本蔚山父良人甘山祖私奴日男曾祖私奴貴卜外祖私奴權永必本安東母私婢永代年柒拾玖乙卯主楊居智許暹妻私婢石乙分年伍拾肆庚辰本蔚山主京居鄭成業父良人李莫同祖私奴愛生曾祖私奴非石外祖私奴安今生本順興率女鋤乙德故率子府焯焯軍鋤乙同年柒丁卯庚午戶口准<sup>65)</sup>

D-2 1759 第三戶水營能櫓軍鰥夫崔命山年陸拾貳戊寅本蔚山父良人甘山祖良人日男曾祖私奴貴卜外祖私奴權永必本安東率雇工女召史今故率人女召史年肆拾參丙子率子焯焯軍私奴鋤乙同年拾參丁卯率儀女召史年參丁丑今加等丙子戶口相准<sup>66)</sup>

‘솔인녀’와 같은 호에서 발견되는 ‘의자’는 18건, ‘의녀’는 4건으로 확인된다. C와 D는 그 중 일부의 사례를 나타낸다. C-1(1771년)에서 김태삼(金太三)의 아내 이사진(李沙進)이 사망한다. C-2(1774년)에 솔인녀 김자은금(金自隱今)이 새로 입호한다. 여기서 솔의자 이자은태(李自隱太)도 같이 입호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아버지인 김태삼과 아들인 이자은태는 성이 불일치한다. 따라서 이자은태는 김자은금이 전남편과 낳은 자식이며, 이자은태의 존재로 인해 김자은금은 재혼 여성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D-1(1753년)의 최명산(崔命山)의 호에 처 돌분(石乙分)이 확인된다. D-2(1759년)에는 돌분 대신에 성 불명의 솔인녀가 확인된다. 이와 동시에 솔의녀도 나타나는데, 6년 동안 최명산 호의 새로운 구성원은 솔인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솔의녀는 솔인녀가 전남편과 낳은 자식이다.

이처럼 ‘솔인녀’가 ‘의자녀’의 친모로 나타나는 사례를 통해 ‘솔인녀’가 재혼 과부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울산호적에서는 ‘의자녀’ 외에도 다른 흔적이 나타난다. ‘과부 호주와 남성 솔인’ 호가 ‘홀아비 호주와 솔인녀’ 호로 전환되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sup>67)</sup>

		서문내리 (西門內里)	박석매(朴石梅) 61세 · 계사(癸巳)	조소사(趙召史) 50세 · 갑진(甲辰)	
3	1786	내상면 동동리 (東洞里)	업무(業武) 김복찬(金福贊) 51세 · 병진(丙辰)	솔인녀(率人女) 소사(召史) 57세 · 경술(庚戌)	솔인녀 → 솔인녀 출호(出戶) 및 환부 기재
	1789	내상면 동동리 (東洞里)	성정군(城丁軍) 환부(鰥夫) 김복찬(金福贊) 54세 · 병진(丙辰)	정보 없음	

출전: 『蔚山府戶籍大帳』

63) 『蔚山府戶籍大帳』, 奎-14981, 205쪽.

64) 『蔚山府戶籍大帳』, 奎-15007, 182쪽.

65) 『蔚山府戶籍大帳』, 奎-14992, 72쪽.

66) 『蔚山府戶籍大帳』, 奎-14987, 60쪽.

E-1 1765 第三戶寡女私婢月今年肆拾陸庚子本金海主李興碩父良人金戒尙祖不知曾祖不知外祖朴太中本密陽率人全介同年陸拾肆壬午等壬午戶口相准<sup>68)</sup>

E-2 1771 第二戶田介同年陸拾捌甲申本慶山父己先祖根用二祖不知率人女婢月今年肆拾玖癸卯主李雲三率女召史年拾陸丙子次女召史年捌甲申等戊子戶口相准<sup>69)</sup>

F-1 1765 第三戶寡女李召史年陸拾柒己卯本慶州父有哲祖峻伊曾祖外祖不知率人盲人宋興眞年柒拾丙子等壬午戶口相准<sup>70)</sup>

F-2 1768 第五戶新盲人宋興晉年柒拾壹戊寅本恩津父有光祖必建曾祖起雲外祖尹弘周本坡平率人李召史年柒拾己卯乙酉戶口相准<sup>71)</sup>

위의 사례는 25개의 ‘과부 호주와 남성 솔인’ 호가 ‘홀아비 호주와 솔인녀’ 호로 변화하는 일부이다. E-1(1765년)의 과녀 월금(月今)의 호에는 솔인 전개동(全介同)이 존재했다. E-2(1771년)에서 전개동이 호주로, 월금은 솔인녀로 전환된다. F-1(1765년)에는 과녀 이소사(李召史)가 호주, 송흥진(宋興眞)이 솔인으로 존재했다. F-2(1768)에서는 송흥진이 호주, 이소사가 여성 솔인으로 전환된다. 과부가 ‘솔인녀’와 여성 솔인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남성과 사실혼 관계의 ‘솔인녀’와 여성 솔인은 재혼한 과부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의자녀’와 함께 ‘과부 호주와 남성 솔인’ 호가 ‘홀아비 호주와 솔인녀’ 호로 전환하는 사실을 통해서 ‘솔인녀’와 재혼 과부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시한 정보만은 모든 솔인녀에게 그 내용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특히, 초혼 연령대에 속한 솔인녀에게 재혼이라는 잣대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sup>72)</sup>

<표-11>은 ‘솔인녀’가 등장하는 1753년부터 1810년까지 호적에서 확인되는 최연소 과부들을 선별하여 연령대를 파악한 것이다. 14개 식년·53개의 면에서 최연소 과부를 선택하였고, 연령을 초반·후반으로 구분하여 각 식년의 평균값을 구했다. 전체적으로 25~29세가 23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보이고 있고, 30~34세가 18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다. 이는 울산 호적에서는 20대 후반의 과부부터 호적대장에 기재하는 경향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67) ‘과부 호주와 남성 솔인’이 사실혼 관계라는 사실은 2장에서 밝혔다. 남성 솔인이 호주로 전환되면 홀아비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호의 형태가 ‘과부 호주와 남성 솔인’과 반대되는 형태를 강조하기 위해 ‘홀아비 호주와 솔인녀 호’로 서술할 것이다.

68) 『蔚山府戶籍大帳』, 奎-15005, 289쪽.

69) 『蔚山府戶籍大帳』, 奎-15006, 279쪽.

70) 『蔚山府戶籍大帳』, 奎-14991, 201쪽.

71) 『蔚山府戶籍大帳』, 奎-15003, 169쪽.

72) 문헌 사료에서 규정하는 여성의 초혼 연령은 14~25세로 추정된다. 단성, 대구, 제주호적에서의 초혼연령은 만 17.5세, 만 18.4세, 18.9세다(김건태, 「18세기 초혼과 재혼의 사회사 -단성호적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1, 2004, 204쪽 ; Kim, K. t., 「Differing patterns of marriage between a city and villages in 18th century Korea: The case of Taegu Area」 『The history of the family』 14, 2009 ; 김건태, 「18~19세기 제주도 여성의 결혼과 출산」 『대동문화연구』 65, 2009, 330~331쪽). 울산호적에서의 여성 초혼연령은 선행연구가 없어 필자가 직접 구할 수밖에 없었다. 1702~1810년(약 100년)까지 모든 식년에서 최연소 초혼 여성의 평균값으로 추정했다. 김건태가 계산한 방법으로 초혼 연령을 계산하면 16.6세(만 15.6세)로 나타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한 최연소 초혼 여성을 제외하면 다른 초혼 여성들은 모두 그보다 연장자이다. 따라서 모든 초혼 여성의 연령을 취합하여 평균 초혼 연령을 계산한다면 16.6세보다는 높게 나타날 것이고, 이는 단성, 대구, 제주의 초혼 연령과 비슷한 수치로 예상된다. 어쨌든 이와 같은 모든 정보를 취합한다면 여성의 초혼 연령은 18~25세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수치를 앞의 분석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표-11>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연소’ 과부들을 선별한 것이다. 당장 1768년의 최연소 과부는 31세로 확인되고, 1810년의 한 면에서는 51세 과부가 최연소로 나타난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1810년에 50대 이전의 과부들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호적대장에는 모든 사람이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20~40대의 과부들은 누락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sup>73)</sup>

<표-11> 1753~1810년 연도별 최연소 과부의 연령대

연도	연령대별 인원 분포(명)					면 계	연령 평균(세)
	20대 초반 20~24세	20대 후반 25~29세	30대 초반 30~34세	30대 후반 35~39세	40세 이상		
1753년		1(26)	2			3	30.3
1759년		3(25)				3	26.6
1765년	2(23)	6		1	1(42)	10	28.9
1768년			2(31)			2	31
1771년	2(24)	4				6	25.7
1774년	2(24)	2	2			6	27.2
1783년		1(26)	1			2	29
1786년	1(21)		2		1(41)	4	32
1789년		2(25)	2			4	29.5
1792년		2(27)				2	28
1795년		1(28)	1			2	29.5
1801년			3(31)			3	33
1804년			1(30)	1		2	33
1810년		1	2(29)		1(51)	4	36.5
인원 계(%)	7(13%)	23(43%)	18(34%)	2(4%)	3(6%)	53(100%)	29.6

출전: 『蔚山府戶籍大帳』

비고: 한 식년에서 최연소 과부의 나이를 ()안에 별도로 표기했다.

1771년 온양면 호적자료에 의하면 16세의 과부가 확인된다. 그러나 그 이전의 식년인 1765년을 확인해 봤을 때, 나이에 맞는 여성을 찾을 수 없었다. 오기일 가능성이 높아 제외했다.

그런데 20대 초반의 과부들은 53명 중 7명, 약 13%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일부 과부들이 호적에서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였더라도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과부들의 각 23(약 43%), 18(약 34%)명이라는 수치와 비교하면 13%의 수치는 빈약하다. 따라서 누락자라는 요인만 가지고 최연소 과부들이 20대 초반의 연령대에 적게 분포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든다.

앞에서의 의문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20대 초반의 과부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상을 ‘남편과 사별한 여성이 20대 초반의 과부는 금방 재혼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보았다. 재혼이라는 이유로 인해 20대 초반의 과부들이 호적대장에 최연소 과부로서 나타나는 수치가 적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관점으로의 접근은 여러 문헌 기록에서 젊은 나이의 과부에게 재혼을 권하는 이야기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열녀 이씨전」<sup>74)</sup>, 「열녀 신씨전」<sup>75)</sup>, 「영남 효열부전」<sup>76)</sup>, 「절부 김씨전」<sup>77)</sup>에서는

73) 권내현은 호구수가 호적의 작성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조정을 거치면서 의도적 또는 관행적으로 누락되었고, 이러한 행위는 시기가 지날수록 호적의 운영이 부실해지면서 점차 확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권내현, 「기획 : 단성호적의 사료적 성격 ; 조선 후기 호적의 작성과정에 대한 분석」, 『대동문화연구』 3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1, 89쪽).

홀로 된 과부에게 재혼을 권유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열녀전에서 남편의 죽음 이후에 주변 인물이 재혼을 권하는 대목을 보여주는 것은 보통 열녀가 그 권유를 거절하고 수절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해당 장면을 분석해보면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주변 인물들이 재혼을 권유하는 이유는 「열녀 이씨전」에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다. 「열녀 이씨전」에서 구체적인 나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젊은 나이에 대한 기준이 잡히지 않는데, 울산읍지인 『학성지(鶴城誌)』의 박소사(朴召史)의 이야기를 참고해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박소사는 차재흥(車載興)의 아내로서 20세에 시집을 갔었다. 그러나 남편이 우울증을 앓았는데, 3년간 치료해도 낫지를 앓았다. 이에 차재흥이 “내 병은 고치려 해도 반드시 일어나지 못하오. 그대는 아직 젊으니 재혼할 수 있을 것이오.” 말하는 장면이 있다.<sup>74)</sup> 박소사가 20세에 시집을 와서 3년간 간호를 하였으니 남편이 재혼을 권유할 때의 박소사의 나이는 23세이다. 남편은 23세의 박소사를 젊다고 이야기 한 것이다. 23세 전후로 젊고 늙음을 구별하는 것은 힘들어 보이지만 적어도 20대 초반의 여성을 젊은 나이라고 인식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젊다는 이유로 재혼을 권유받은 열녀 이씨는 아마 20대 초반이거나, 20대 초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경계의 나이였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열녀 신씨전」의 신씨는 남편이 사망했을 때의 나이가 28세로서 20대 후반의 여성이었는데도 재혼을 권유받았다. 20대 후반의 여성에게도 재혼 권유가 이루어진다면, 20대 초반의 과부에게는 더욱 적극적으로 재혼을 권유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부 김씨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22세의 나이로 과부가 된 김씨에게 재혼 권유가 들어오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젊은 나이의 과부들에게 재혼 권유를 하는 이야기를 통해 10대 후반~20대 초반의 솔인녀들도 과부로 바라볼 여지가 충분하다.

## 2) ‘솔인녀’의 표기와 가내 위상

울산호적에서는 ‘솔인녀’가 처로 전환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앞에서 여러 유형을 살펴봤듯이 호적에서 어떠한 두 존재가 서로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그 둘이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2장의 여성 솔인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사실혼의 여성이 정식 아내인 처로 전환되는 사례를 통해 확인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규칙한 현상이 나타난다. ‘솔인녀’가 처로 전환될 수 있지만, 모든 솔인녀가 동일한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별적인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

74) 이옥(李鉦)의 「열녀 이씨전」. 어느 산골에 사는 한 부인의 남편이 일찍 죽었는데, 친정아버지가 아직 열부가 젊다는 이유로 재혼을 권했다. 그러나 호랑이의 도움으로 친정부모가 더 이상 재혼을 권하지 않게 되었다는 내용이다(이혜순·김경미, 『한국의 열녀전』, 도서출판 월인, 2002, 149~152쪽).

75) 김재홍(金在洪)의 「열녀 신씨전」. 열부 신씨의 남편이 요절했는데, 그녀의 나이 28세였다. 이에 친정부모가 재혼시키려고 했으나 임신한 아이를 핑계로 거절하는 내용이 담겨있다(위의 저서, 137~139쪽).

76) 서경창(徐慶昌)의 「영남 효열부전」. 영남의 한 평민 여성이 시집간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남편이 죽었는데, 친정어머니가 여성이 외롭게 지내는 것을 염려하여 재혼을 권유했다. 그러나 평민 여성은 시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재혼을 거절한 내용이 담겨있다(위의 저서, 140~148쪽).

77) 전주(田愚)의 「절부 김씨전」. 절부 김씨가 22세에 과부가 되었는데, 이웃집 할머니가 재혼하려고 권유하자 거절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위의 저서, 2002, 128~130쪽).

78) 성범중 역주, 『(국역)학성지』, 울산 : 울산남구 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2010, 70쪽.

아보겠다.

G-1 1786 第二戶 業武朴尙鶴年肆拾參甲子本密陽父學生成輝祖學震碩曾祖學生宗逸外祖展力副尉守門將朴世寬本蔚山率人女金姓年肆拾肆癸亥婢自隱連年辛亥前逃亡等癸卯戶口相准<sup>79)</sup>

G-2 1789 第一戶 業武朴尙鶴年肆拾陸甲子本密陽父再輝祖震碩曾祖宗逸外祖朴世寬本蔚山妻金姓年肆拾柒癸亥本慶州父是興祖哲周曾祖成叔外祖任興裁本豐川率子於仁年拾貳戊戌等丙午戶口相准<sup>80)</sup>

H-1 1774 第二戶忠義衛安聖輝年肆拾乙卯本順興父忠義衛汝碩祖閑良就迪曾祖雲康外祖李雲本月城率人女金召史年肆拾壹甲寅率女召史年陸己丑等辛卯戶口相准<sup>81)</sup>

H-2 1789 第三戶忠義縲夫安聖好年伍拾伍乙卯本順興父汝石祖就迪曾祖云康外祖李雲本慶州率人女金召史年伍拾陸甲寅等丙午戶口相准<sup>82)</sup>

G-1(1786)에서 솔인녀 김성(金姓)은 G-2(1789)에서 처로 전환되었음이 확인된다. 3년만에 사실혼 관계에서 공식 혼인관계로 인정받은 것이다. 그런데 H-1(1774)의 솔인녀 김소사(金召史)는 H-2(1789)에서도 솔인녀로 존속하고 있다. 15년이 지났음에도 처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문헌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점이 확인되지 않아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솔인녀’가 처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살펴볼 수 있다. 울산호적에서는 첩이 ‘솔인녀’에 포함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I 1735 第一戶射廳來幼學卞哲文年陸拾玖庚未\*本草溪父權知訓練院奉事成龍祖老職通政大夫鶴齡曾祖學生昇立外祖學生李楹本慶州妾陸召史年伍拾丙寅主彥陽居李柁父良人雲迪率子幼學命九年貳拾伍辛卯今加妾子順奇年捌己酉彥陽去婢哲今四所生婢日今年拾伍辛丑今逃亡壬子戶口相准<sup>83)</sup>

J 1753 第一戶老職通政大夫卞哲文年捌拾捌丙午本草溪父訓練院奉事成龍祖老職通政大夫鶴齡曾祖學生昇立外祖學生李楹本月城率人陸姓年陸拾伍己巳本慶州率子別軍官舜紀年貳拾柒丁未婢鐵分一所生婢日今前逃亡庚午戶口相准<sup>84)</sup>

I(1735)에서 호주 변철문(卞哲文)의 호에는 첩 육소사(陸召史)가 존재한다. J(1753)에서 첩 육소사는 솔인으로 전환되었음이 확인된다. 나이의 변화가 일치하지 않지만, 1735년에 첩의 자식인 순기(順奇)가 1753년에 솔자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둘은 동일인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솔인녀’의 범주에 자신이 처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재혼 과부와 정식 아내로 인정받지 못하는 첩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재혼한 과부는 첩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게 되면서 가내 위상이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85)</sup>

79) 『蔚山府戶籍大帳』, 奎-14984-2, 103쪽.

80) 『蔚山府戶籍大帳』, 奎-14976, 285쪽.

81) 『蔚山府戶籍大帳』, 奎-15007, 220쪽.

82) 『蔚山府戶籍大帳』, 奎-14976, 244쪽.

83) 『蔚山府戶籍大帳』, 奎-15001, 168쪽.

84) 『蔚山府戶籍大帳』, 奎-14992, 177쪽.

85) 첩의 가내 위상은 여성호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서 여성호칭은 신분별 상하의 서열관념이 내포되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고(김경란, 「조선후기 『단성현호적대장』의 여성과악실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113쪽), 호적대장에서 첩은 호주의 직역보다 한 단계 아래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김경란, 앞의 논문, 2003, 131~132쪽). 이러한 경향과 함께 첩의 호칭을 소사로 고정한다는 규정을 봤을 때(“士大夫畜女 勿論良籍 勿爲氏籍 以某召史書填…” 『戶

재혼 과부는 이러한 인식과 대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들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솔인녀가 처로 전환되는 현상이나 전처 자식의 외조를 솔인녀의 친부(親父)로 적는 행동을 통해서 그 의도를 엿볼 수 있다.<sup>86)</sup>

**K-1(1765)** 第四戶鰥夫龍駕驛吏金太元年貳拾丙寅本金海父驛吏鶴柱祖驛吏云迪曾祖嘉善中樞府事戒弘外祖驛吏朴得千本慶州率人金召史年貳拾玖丁巳等壬午戶口相准<sup>87)</sup>

**K-2(1768)** 第四戶龍駕驛吏金太元年貳拾參丙寅本金海父驛吏學柱祖驛吏云迪曾祖嘉善戒弘外祖驛吏朴得天本慶州率人池召史年參拾貳丁巳率女召史年伍甲申今加等乙酉戶口相准<sup>88)</sup>

**K-3(1792)** 第三戶金太元故代子驛吏時丁年參拾肆己卯本金海父太元祖通政學柱曾祖通政雲迪外祖通政池貴晚本金海妻徐姓年參拾參庚辰本大丘父通政月明祖嘉善云世曾祖司果一禮外祖黃甘植本昌原母池姓年伍拾捌乙卯女年柒丙午女年伍戊申女年參庚戌等己酉戶口相准<sup>89)</sup>

위의 사례는 ‘솔인녀’가 자신의 친부를 전처 자식의 외조로 기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통 재혼가정에서 자식의 외조 정보와 어머니의 친부 정보가 일치하는 형태는 남편과 솔인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울산호적에서는 계모와 전처 자식의 관계임에도 계모의 친부와 전처 자식의 외조가 일치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것이다.

K는 김태원(金太元)·김시정(金時丁) 부자의 정보를 보여준다. 김태원은 K-1(1765)에서 솔인 김소사(金召史)와 같이 있지만, K-2(1768)에서는 김소사를 대신해 솔인 지소사(池召史)가 있는 변화가 나타난다. K-3(1792)에서 지소사는 김태원 사망 이후 아들 김시정의 어머니로 나타난다. 이때 김시정의 외조와 어머니 지성의 성씨가 일치한다. 김시정은 출생연도가 1759년으로 확인되고, 어머니 지성은 1768년에 입호했기 때문에 둘은 피를 나눈 관계가 아닌 계모-전처 자식의 관계로 봐야 한다. 그러나 호의 형태는 계모의 친부와 전처 자식의 외조정보가 일치하는 모순이 존재한다. 이는 솔인녀 지소사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자신이 공식적인 아내에 있었음을 전처 자식의 외조정보를 이용해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다수의 사례에서 ‘솔인녀’가 외조 기재를 이용해 자신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모습이 보인다.

아래 <표-12>는 재혼가정에서 나타나는 외조정보 기재 유형의 3가지를 아버지와 ‘솔인녀’의 생존 여부와 아버지와 자녀의 거주지역 일치 여부에 따라 분류해놓았다. ‘솔인녀’의 친부와 전처 자식의 외조정보가 불일치하는 사례는 46건이다. 호적에 솔모로 기재되었지만, 계모가 속하는 호의 형태로 호적을 작성하여 솔모가 계모로 인식되기에 문제가 없게 한 것이다.

외조부지의 경우에는 외조정보의 일치, 불일치와는 다르게 확실하게 알 수 없다. ②의 사례와 같이 외조부지에서 외조정보가 일치로 전환되는 사례를 보면, 외조부지는 모른다는 의

籍事目』, 편자미상, 규장각 소장, no.12318), 첩의 가내 위상은 높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울산호적에서는 첩도 속해 있는 ‘솔인·솔인녀’의 호칭이 호주보다 한 단계 아래로 기재되고 있다. 이는 ‘솔인·솔인녀’의 서열이 낮음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그 범주에 속해있는 정식 아내의 위치에 있는 재혼 과부들 또한 가내 위상이 낮았다고 볼 수 있다.

86) 본 연구에서 여성이 호적대장을 작성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백성들 대부분이 문맹이라 호구단자의 작성을 대필을 의뢰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장경준, 「조선 후기 호적대장과 호의 성격」,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30~131쪽). 호주가 호구단자 작성의 대필을 의뢰하기 전에 배우자인 과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87) 『蔚山府戶籍大帳』, 奎-14991, 230쪽.

88) 『蔚山府戶籍大帳』, 奎-15003, 192쪽.

89) 『蔚山府戶籍大帳』, 奎-15004, 194쪽.

미보다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sup>90)</sup>

<표-12> 아버지와 ‘술인녀’의 생존 여부에 따른 전처 자식의 외조 기재 방식

구분		외조不知	외조정보 일치	외조정보 불일치		오기 ***	계 (명)
				외조성씨 불일치	외조이름 불일치		
아버지, 술인녀 모두 생존	同里·他戶	7	8 ①	12			27
	他里·面	3	1	6		1	11
아버지 사망 술인녀 생존	同戶*	4 ②	7 ③	1	2	2	16
	同里·他戶 **			1			1
	他里·面 **			2			2
아버지 생존 술인녀 사망	同里·他戶	1					1
	他里·面		1	1			2
아버지, 술인녀 모두 사망	同戶****	4 ③	1 ②	3			8
	同里·他戶	2	1	6 ①			9
	他里·面	1	1	12			14
계(명)		22	20	44	2	3	91

출전: 『蔚山府戶籍大帳』

비고: \* 술인녀 → 모(母).

\*\* 술인녀가 생존 가능성 있고, 자식과 같은 호에 보이지 않는 경우.

\*\*\* 아버지의 외조정보를 기재한 경우.

\*\*\*\* 호적에 代子가 기재되어 있어 아들의 호주승계가 확실한 경우 또는 중간에 정보를 알 수 없지만 같은 리의 자식에게 호주승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나 아버지와 ‘술인녀’의 생존 여부를 염두에 두고 살펴본다면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는 유형이 존재한다. 아버지와 술인녀 모두 생존 또는 아버지가 사망하고 술인녀만 생존해 있으면 외조정보가 일치하는 사례가 각 9, 7건으로 전체 20건 중 16건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술인녀가 사망한 이후에는 외조정보가 일치하는 사례가 3건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술인녀가 생존해있는 경우 술인녀의 친부와 전처 자식의 외조를 일치시키는 경향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표-12>의 ①과 ③에 해당하는 자식들은 아버지와 술인녀가 모두 생존해있거나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외조정보를 계모의 친부와 일치하고 있으나, 계모가 사망한 이후에는 외조정보 불일치와 외조부지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①~③의 사례를 통해 ‘술인녀’가 전처 자식의 외조를 자신의 친부와 일치시켜 호적에 반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술인녀’는 정식 아내로서 자신의 가내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90) 노비 관련 문서에서 양친교혼의 흔적을 숨기기 위해 노비의 부모 중 양인신분을 가진 사람을 부지로 적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부지가 법의 단속을 피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이다(이영훈, 「18~19세기 노비 세습원리의 변화: 강원도 원주목 양반가의 사례분석」, 『한국중세사논총』, 논총간행위원회, 2000, 720~721쪽). 울산호적에서도 부지는 ‘모른다’라는 의미 외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 4. 조선후기 울산지역 평민계층의 재혼 관행과 그 변화

##### 1) ‘술인·술인녀’의 주요 신분계층과 그 계층의 재혼 양상

3장에서 울산호적은 재혼한 과부를 ‘술인녀’로 기재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재혼 과부가 확실하지만, 술인녀가 아닌 처로 기재되는 사례가 존재한다.<sup>91)</sup> 이처럼 재혼 과부를 ‘술인녀’로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술인녀’가 모든 재혼 과부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이 나타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술인녀’가 존재하는 호주의 신분·직역을 분석하여 ‘술인녀’를 사용하는 신분 계층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표-13> 호주의 신분·지역별 ‘술인·술인녀’의 분포 비율

단위: 명, (%)

연도	신분					연도 계
	양반	중인	평민	천민	미분류	
1729	1(100%)	0(0.0%)	0(0.0%)	0(0.0%)	0(0.0%)	1(100%)
1735	0(0.0%)	0(0.0%)	4(100.0%)	0(0.0%)	0(0.0%)	4(100%)
1753	1(8.3%)	2(16.7%)	3(25.0%)	4(33.3%)	2(16.7%)	12(100%)
1759	1(2.1%)	8(16.7%)	29(60.4%)	3(6.3%)	7(14.6%)	48(100%)
1765	9(2.1%)	59(13.7%)	297(68.8%)	43(10.0%)	24(5.6%)	432(100%)
1768	10(6.4%)	19(12.1%)	109(69.4%)	11(7.0%)	8(5.1%)	157(100%)
1771	5(2.3%)	26(11.9%)	153(70.2%)	14(6.4%)	20(9.2%)	218(100%)
1774	8(3.0%)	40(14.9%)	187(69.5%)	11(4.1%)	23(8.6%)	269(100%)
1783	6(3.1%)	11(5.6%)	141(71.9%)	2(1.0%)	36(18.4%)	196(100%)
1786	1(0.5%)	33(18.0%)	129(70.5%)	8(4.4%)	12(6.6%)	183(100%)
1789	5(2.5%)	24(12.1%)	151(76.3%)	6(3.0%)	12(6.1%)	198(100%)
1792	0(0.0%)	22(12.0%)	156(84.8%)	1(0.5%)	5(2.7%)	184(100%)
1795	0(0.0%)	19(11.4%)	143(86.1%)	1(0.6%)	3(1.8%)	166(100%)
1801	4(1.7%)	24(10.4%)	182(79.1%)	7(3.0%)	13(5.7%)	230(100%)
1804	0(0.0%)	5(16.1%)	19(61.3%)	3(9.7%)	4(12.9%)	31(100%)
1810	2(1.1%)	20(11.4%)	141(80.6%)	5(2.9%)	7(4.0%)	175(100%)
신분 계	53(2.1%)	312(12.5%)	1,844(73.6%)	119(4.8%)	176(7.0%)	2,504(100%)

출전: 『蔚山府戶籍大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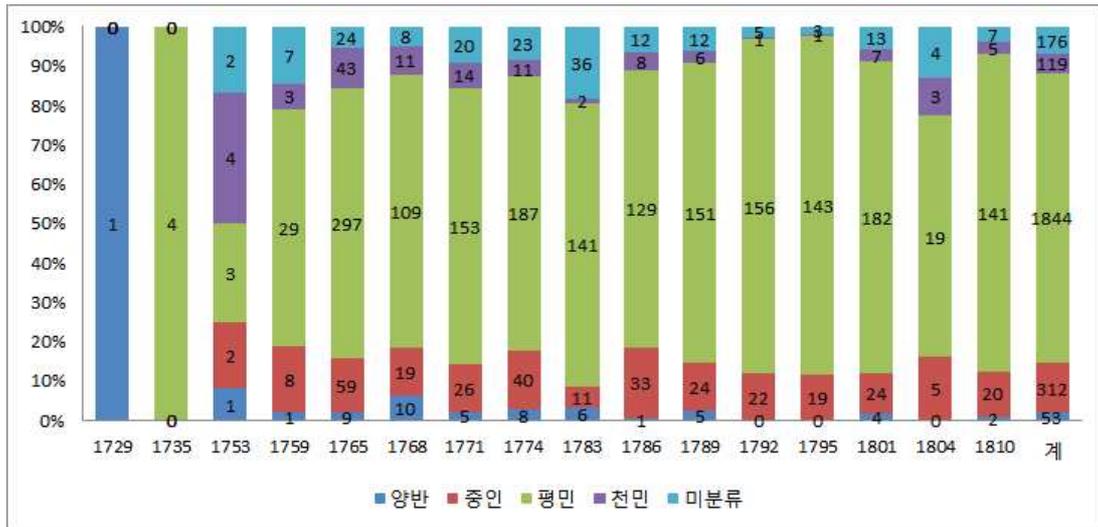
<표-13>은 호주의 신분·지역별 ‘술인·술인녀’의 분포를 나타낸 결과이다.<sup>92)</sup> 여성 술인은 ‘술인녀’와 같은 성격을 가졌으므로 여성 술인도 포함하여 조사했다. 홀아비와 관련되어 있는 2,504명을 대상으로 하고 이를 분류표에 따라 양반, 중인, 평민, 천민, 미분류<sup>93)</sup>로 분

91) 학성 이씨 현령공파의 이수성(李守成)은 1807년에 아내 박씨(朴氏)가 사망하였지만 1810년에 바로 새로운 아내 김씨(金氏)가 호구단자에서 확인된다. 1810년의 호적대장은 이수성이 거주하는 청량면이 남아있으므로 교차검증이 가능하다. 새로운 아내 김씨는 32세로 재혼한 과부일 가능성이 높지만 호적대장에서 술인녀로 나타나지 않는다(울산박물관, 『학성 이씨 현령공파 기증 고문서』, 58~81쪽).

92) 신분·지역의 분류는 기본적으로 이준구가 제시한 분류법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울산 지역의 실태에 맞게 부분적으로 수정했다. 이준구의 분류 기준은(이준구, 『조선후기 신분직역변동연구』, 일조각, 1993)참고.

93) 미분류는 호주의 직역을 참고했을 때 직역이 존재하지 않거나, 정보가 부족하여 신분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를 모아놓은 항목이다. 대표적으로 병인(病人), 호주의 직역은 노인(老人), 여정(餘丁), 정배죄인(定配罪人)처럼 신분을 확인하기 어렵고, 사조정보에서도 직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다른

류했다. 전체 2,504명 중에 평민이 1,844명으로 73.6%의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은 중인으로 312명·12.5%이며, 미분류 176명·7.0%, 천민 119명·4.8%의 순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은 양반이 53명·2.1%로 가장 적은 수로 확인되었다. 특히 평민계층의 인원과 비율은 비교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신분 계층의 수치를 능가한다.



<그림-1> 호주의 신분·지역별 ‘술인·술인녀’의 분포 비율 그래프

먼저 가장 낮은 인원수를 보이는 양반은 기존의 울산지역의 사족이 아니라 신분 상승을 통해서 양반을 지향하고 있는 유형 또는 기존의 양반층에서 모종의 이유로 신분 하락을 겪고 다시 양반으로 상승하는 유형으로 확인된다. 아직 양반 의식이 부족하거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술인녀에서 처로 바꾸지 못한 것이다.

중인계층은 양반에서 탈락된 사람들, 평민계층에서 신분 상승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계층이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술인녀가 양반보다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천민계층은 재혼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과 면천하여 평민이 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중인보다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사실상 약 74%의 비율을 단독으로 차지하는 평민계층으로 인해 ‘술인녀’를 통한 울산지역의 재혼의 양상을 알아보는 작업은 평민계층의 재혼 양상을 관찰하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후로 ‘술인·술인녀’를 통한 재혼의 양상과 관행은 평민의 재혼 양상과 관행으로 통합하여 서술한다.

아래 <표-14>는 ‘술인·술인녀’와 호주의 연령대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2>는 이를 그래프로 옮긴 것이다.<sup>94)</sup> 할아버지의 경우에는 30대 후반까지 증가한 뒤 50대 후반까지 증감하다가 60대에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모습이 보이며, ‘술인·술인녀’의 경우에는 40대 초반에 정점을 찍은 이후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호적의 작성 목적과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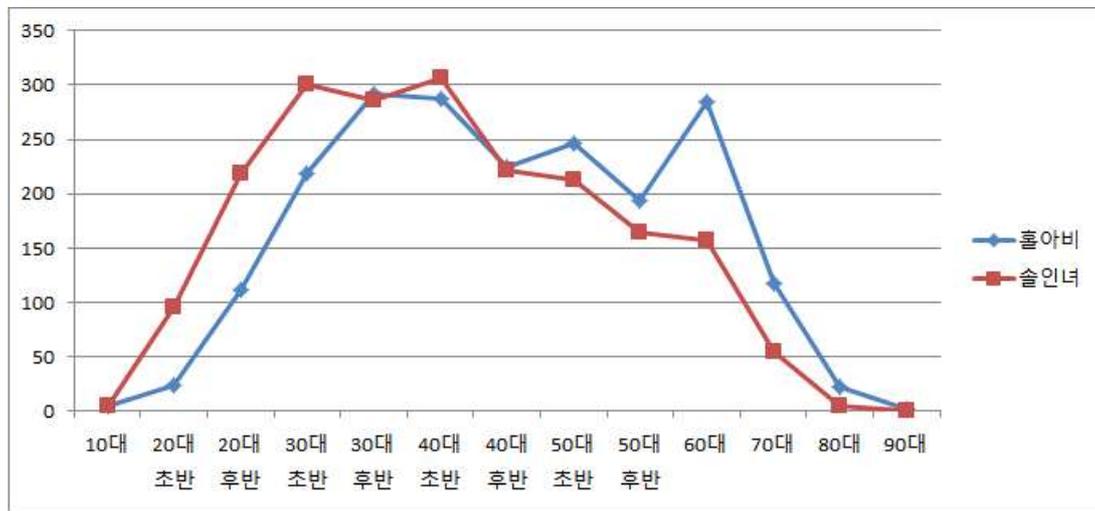
식년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94) 할아버지와 ‘술인·술인녀’의 연령별 분포는 할아버지와 과부가 재혼할 때의 나이를 확인한 것이다. 그런데 울산호적은 모든 식년과 면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재혼 시기를 추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호에서 ‘술인·술인녀’가 최초로 나타나는 식년을 재혼시기로 인식하여 할아버지와 과부의 재혼 나이를 추정했다.

<표-14> 홀아비와 '솔인·솔인녀'의 연령별 분포

단위: 명

구분	10대	2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후반	40대 초반	40대 후반	50대 초반	50대 후반	60대	70대	80대	90대	계
홀아비	5	24	111	219	292	287	225	247	193	284	117	22	2	2,028
솔인녀	5	96	218	301	286	306	222	213	164	157	55	5	0	2,028

출전: 『蔚山府戶籍大帳』



<그림-2> 홀아비와 '솔인·솔인녀'의 연령별 분포 그래프

남성은 호주로서 하나의 호를 책임지고 있다. 자식들이 장성하면 아들은 독립하여 새로운 호의 호주가 되고 딸은 시집을 간다. 이러한 상황 속에 아내가 사망하게 되면 집안일을 해결 사람이 없게 된다.<sup>95)</sup> 또한 남성은 직역을 가짐으로써 국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국가의 조세수취 대상으로 여겨졌으므로, 홀아비가 경제적인 부담을 내려놓고 아들의 호에 솔부(率父)라는 구성원으로 편성되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남성은 늦은 나이에도 재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평민 홀아비들이 '솔인·솔인녀'와 다르게 60대의 인원수가 최고치를 나타내는 것이 그 이유를 뒷받침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조선 정부는 호적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호주가 되는 호를 선호했다. 특히, 아들이 있는 과부의 호에서 과부보다 아들이 새로운 호주가 되는 방향을 권장했다.<sup>96)</sup>

95) 호주의 장자(長子)가 같은 호에 있는 유형도 존재한다. 이러한 형태의 가정은 아내 대신에 며느리가 집안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혼자 남은 홀아비보다는 재혼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96) 『호적사목(甲午式戶籍事目)』의 27번째 조목에 “과부가 비록 가사(家事)를 주관하더라도 만약 아들이 장성하였으면 그 아들을 주호로 삼는다(“寡婦雖主家事 子若長成 以其子 主戶 爲白齊” 『戶籍事目』, 편자미상, 규장각 소장, no.12318).”라는 내용이 존재한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는 간행연도를 1774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후기의 중앙정부에서는 과부 대신에 그 아들인 남성을 주호로 세우는 것을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평민 과부가 재혼을 선택하는 것은 경제적인 안정성과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그러한 남편의 역할을 장성한 아들이 대신 수행할 수 있었다. 앞의 2가지 내용을 종합해본다면, 과부는 장성한 아들의 호에서 어머니로 살아가는 삶을 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술인·술인녀’가 40대 초반 이후로 감소하는 현상은 과부가 어머니로 전환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이같이 ‘술인·술인녀’가 평민계층에 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고 남성과 여성의 연령별 재혼 양상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울산호적에서는 ‘술인·술인녀’를 통해 단편적인 재혼 양상 외에도 재혼 관행과 그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살펴 보겠다.

## 2) 여성 중심 재혼가정의 소멸

‘술인·술인녀’의 사례를 보면 울산에서는 조선후기에 들어서도 여성이 가정에 중심이 되는 재혼 관행이 일정 기간 유지되었다. 기본적으로 호적에서는 과부가 재혼했음을 알려주는 단서인 의자녀의 존재를 통해서 남성이 여성의 전남편 자식과 함께 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울산호적에서는 18세기 중반에 ‘술인녀’가 등장하는 큰 변화가 감지되었다. ‘술인녀’의 등장과 함께 재혼가정과 관련 있는 요인들에서 변화가 나타난다면 오래전부터 지속되던 재혼 관행이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표-15> 1609~1810년 연도별 ‘의자녀’ 인원수

단위: 명

연도	의자 수	의자 계	의녀 수	의녀 계	술인녀 수
17세기	1609	9	1	21	0
	1672	15	6		0
	1684	24	11		0
	1687	0	0		0
	1699	9	3		0
18세기	1702	0	0	68	0
	1705	18	10		0
	1708	19	10		0
	1714	6	5		0
	1720	8	1		0
	1726	5	1		0
	1729	15	8		0
	1735	5	11		0
	1753	8	3		10
	1759	12	6		50
	1765	43	10		388
	1768	5	1		114
	1771	22	2		196
	1774	20	0		264
	1783	2	0		206
	1786	17	0		183
	1789	16	0		198
1792	0	0	187		

	1795	2		0		166
19세기	1801	5	8	0	0	234
	1804	2		0		87
	1810	1		0		175
총계		288		89		2,458

출전: 『蔚山府戶籍大帳』

울산호적에서 1609년부터 1810년까지의 의자녀는 의자 288명, 의녀 89명으로 총 377명이 확인된다. 의자는 1792년부터 1810년까지 1자리 수로 인원수가 감소한다. 의녀는 1771년 이후로 호적대장에서 그 존재가 소멸했다. 반면에 ‘솔인녀’는 2,458명으로 나타나는데, ‘솔인녀’는 18세기 후반에도 그 수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활발한 재혼 관행과는 다르게 전남편의 자식을 데리고 재혼을 하는 사례는 갈수록 적어지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시기가 지날수록 재혼한 과부가 전남편의 자식과 같이 살지 않는 경향이 높아졌다는 의미이다.

또한 ‘의자녀’ 외에도 여성 ‘솔인·솔인녀’의 친족들의 유무를 통해 관행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다. 홀아비가 과부 집에 들어간 재혼은 과부의 친족들과 같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A 1765** 第四戶舟師能櫓軍金莫介年參拾玖丁未本金海父造今山祖完福外祖不知率人女召史年參拾玖丁未 率妻媪李老未年貳拾丙寅率 妻母年陸拾參癸未 率女世郎年拾丙子等壬午戶口相准

**B 1765** 官奴金德興年參拾壹乙卯本金海父碩好祖宣略將軍汝元曾祖顯信校尉仁基外祖盧興柱本寧海率人女金召史年貳拾肆壬戌本慶州率母盧召史年柒拾參癸酉 率妻父金正男年陸拾參癸未 率妻媪斗見年貳拾捌戊午 率妻媪妻召史年貳拾伍辛酉等壬午戶口相准者

**A**는 대현면의 김막개(金莫介)의 사례이다. 1765년 김막개의 호에는 솔인녀 소사(召史)와 처남(妻媪) 이노미(李老未), 이름 불명의 처모(妻母)가 식솔로 같이 있었다. 하지만 처남과 처모가 존재함에도 처의 모습은 확인할 수가 없다. 보통 처가 사망한 이후에는 그녀와 관련 있는 인물들에게 전처(前妻)라는 표기가 붙는다. 따라서 김막개 호의 처남과 처모는 솔인녀의 친족이다.

**B**는 부내면의 김덕흥의 사례인데, 1765년의 호적대장에서 솔인녀와 3명의 식솔이 함께 나타난다. 솔인녀 김소사(金召史)와 처부(妻父) 김정남(金正男), 처남(妻媪) 두견(斗見), 처남의 처(妻媪妻)<sup>97)</sup> 소사(召史)로 확인된다. 이처럼 홀아비가 과부의 친가에서 재혼해서 과부의 친족들이 호의 구성원으로 등장하는 사례는 1801년에 2건만 확인된다. 18세기 중반에 여성 솔인과 솔인녀의 인원이 급증하는 사실로 봤을 때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기존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여성이 중심이 되는 재혼가정을 의자녀의 감소 및 소멸과 처의 친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현상과 같이 살펴본다면, 점차 남성 중심의 재혼가정을 꾸리는 경향으로 변화했다고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97) 여기에서의 생(甥)은 남(甥)의 오기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에서 생(甥)은 자매의 아들의 지칭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생질(甥姪)이 자매의 아들이고, 생(甥)을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는다(이중서, 『고려·조선의 친족용어와 혈연의식-친족관계의 정형과 변동』, 신구문화사, 2009, 46~47쪽). 따라서 김덕흥 호의 처생처(妻甥妻)는 처남처(妻甥妻)의 오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3) 평민층의 관행 유지와 양반층의 금기 의식 성장

앞에서 재혼가정에서의 의자녀와 처의 친족이 소멸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여성 중심에서 남성 중심의 재혼가정으로 호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은 부계 중심 사회를 지향하던 성리학의 윤리관이 18세기 중반 이후로는 평민계층에도 침투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과 달리 재혼을 부도덕하게 여기는 성리학 윤리관은 아직 평민층에 침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울산에서는 ‘솔인녀’를 통해 19세기 초반까지도 평민들은 활발히 재혼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본래 호적대장에서 의자녀 외에도 ‘후처’(後妻)를 통해 재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표-16> 1609~1810년 ‘후처’ 인원수

단위: 명

연도	‘후처’ 수	‘후처’ 계	솔인녀 수
17세기	1609	9	0
	1672	98	0
	1684	96	0
	1687	32	0
	1699	44	0
18세기	1702	10	0
	1705	31	0
	1708	27	0
	1714	29	0
	1720	44	0
	1726	9	0
	1729	28	0
	1735	27	0
	1753	9	10
	1759	3	50
	1765	7	388
	1768	2	114
	1771	3	196
	1774	0	264
	1783	0	206
	1786	0	183
	1789	0	198
1792	0	187	
1795	0	166	
19세기	1801	0	234
	1804	0	87
	1810	0	175
총계		508	2,458

출전: 『蔚山府戶籍大帳』

<표-16>은 1609~1810년까지의 ‘후처’의 인원을 보여주고 있다. 약 200년의 기간 동안 508명의 ‘후처’가 호적대장에서 확인된다. 1672년부터 1699년까지의 ‘후처’가 270명으로, 전체 중에 절반이 넘는 인원이 27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몰려있다.

‘후처’의 변화는 18세기 초반부터 확인할 수 있다. 1729년부터 1759년까지의 호적대장은 같은 면이 남아있어 비교가 가능하다. 3개 면의 ‘후처’ 인원수가 30명에서 4명으로 줄어드는 변화가 보인다. 또한 모든 면이 남아있는 1765년을 살펴보면 ‘후처’의 인원이 8명만 보여 인원수의 감소를 명백히 알 수 있다. 1771년의 2명의 ‘후처’를 마지막으로 울산호적에서는 ‘후처’가 소멸된다.

반대로 ‘술인녀’는 18세기 중반부터 그 수가 급증한다. 재혼을 알 수 있는 ‘후처’의 소멸과 ‘술인녀’ 인원수 증가의 시기가 맞물리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후처’를 대신해서 ‘술인녀’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후처’와 ‘술인녀’의 차이점은 재혼한 여성을 정식 아내로 인정하는 여부다. ‘후처’는 해당 식년 이후에 일반적인 처로 기재되어 정식 아내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술인녀’는 처로 기재되지 못하고 첩과 같은 범주에 포함되어 그 위상이 낮아졌음을 앞에서 확인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봤을 때 울산지역에서 재혼 관행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후처’와 ‘술인녀’는 동일하게 재혼을 알려주는 표현이다. 18세기 중반에 한쪽은 소멸, 한쪽은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혼의 감소로 이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호적에서는 재혼을 표현하는 용어의 변화가 나타나지만, 울산지역 평민계층의 재혼 관행은 유지되었다고 봐야한다.

‘후처’와 ‘술인녀’는 오히려 양반층에서 나타난 관념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호적 작성의 주도층인 양반들이 ‘술인녀’가 나타나는 18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성리학적 윤리관에 맞춰 호적을 작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양반들은 정식 아내의 위치에 있는 ‘후처’ 대신에 사실혼 관계로 보이는 ‘술인녀’로 기재하는 행동을 통해서 평민층 과부에게 정조의식을 갖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추측된다.

술인녀의 사조정보 미기재를 이용해 앞의 추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경국대전』 호구식에 의하면 호주와 배우자의 사조정보는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술인녀는 배우자임에도 사조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C-1 1801 第四戶營弓人金命守年陸拾肆戊午本慶州父業武興萬祖司僕世好曾祖業武海鳳外祖業武金天成本金海率人女金召史年陸拾壹辛酉率女召史年參拾肆戊子次女召史年拾壬子等戊午戶口相准<sup>98)</sup>

C-2 1804 第二戶弓人金命守年陸拾柒戊午本慶州父興萬祖世好曾祖海鳳外祖金千成本金海妻金姓年陸拾肆辛酉本金海父善鏡祖重興曾祖銀培外祖白禮宗本慶州女召史年拾參壬子等辛酉戶口相准<sup>99)</sup>

D-1 1774 第五戶良人金衡五年參拾陸己未本金海父學生九鼎祖學生聲振曾祖學生俊胤外祖學生尹時弼本坡平率人女張召史年參拾乙丑本仁同率女召史年柒戊子辛卯戶口相准<sup>100)</sup>

D-2 1771 第三戶良人金衡五年參拾參己未本金海父學生九鼎祖學生聲振曾祖學生俊胤外祖學生尹時弼本坡平率人女張召史年貳拾柒乙丑本仁同父良人世杰三祖不知率女召史年肆戊子戶口相准<sup>101)</sup>

E-1 1771 第一戶別盜捕李萬栽年陸拾貳己丑本慶州父生立祖思民曾祖不知外祖崔天得率人女劉召史年伍拾玖癸巳四祖不知率子鄉廳小童聖右年拾陸丙子戊子戶口相准<sup>102)</sup>

E-2 1774 第一戶別討捕李萬栽年陸拾陸己丑本慶州父生立祖思民曾祖不知外祖崔分伊本慶州率妻劉召史年陸拾貳癸巳本江陵父才必祖得尙二祖不知率子鄉廳小童聖佑年拾玖丙子辛卯戶口相准<sup>103)</sup>

98) 『蔚山府戶籍大帳』, 奎-14988, 52쪽.

99) 『蔚山府戶籍大帳』, 奎-14977, 58쪽.

100) 『蔚山府戶籍大帳』, 奎-15007, 42쪽.

101) 『蔚山府戶籍大帳』, 奎-14981, 39쪽.

102) 『蔚山府戶籍大帳』, 奎-14981, 36쪽.

C-1(1801)의 김명수(金命守)의 호에서 솔인 김소사의 존재가 확인된다. 이때 솔인녀의 사조정보는 생략되고 바로 자녀의 정보가 위치해있다. D-1(1774)의 김형오(金衡吾)의 호에서도 솔인녀 장소사(張召史)의 사조정보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지막 E-1(1771)에서는 다른 2개의 사례와 달리 부지(四祖)를 기재하여 솔인녀 유소사(劉召史)의 사조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나타냈다. E의 유소사의 사례처럼 정말로 사조정보를 알지 못해 솔인녀의 사조정보를 생략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C-2(1804), D-2(1771)를 살펴보면 솔인녀 김소사는 처 김성으로 전환되어 사조정보를 모두 기재했고, 장소사는 사조정보 중 아버지의 정보를 기재했다. 즉, 호적을 작성하는 주도층이 솔인녀의 사조정보를 알면서도 일부러 은폐했다고 볼 수 있다.

양반들의 이러한 행위는 재혼 과부들 스스로가 자신이 부도덕한 존재로 생각하게끔 하는 결과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솔인녀’가 처로 전환되는 사례뿐만 아니라 재혼한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된 뒤에, 자신을 친모처럼 호적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이끌어낸 것이다.

하지만 호적대장 속에 양반층의 변화한 관념을 반영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평민층은 활발한 재혼 관행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시간이 흘러 부계 중심 사회의 윤리관이 울산지역 평민층에 침투한 것과는 달리 과부들의 정조의식은 침투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울산지역에서는 18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평민의 재혼 관행은 그 이후에도 유지되었고, 양반은 재혼 금기 의식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103) 『蔚山府戶籍大帳』, 奎-15007, 52쪽.

## 5. 결론

호적대장을 이용하여 과부의 재혼을 확인하는 기존의 연구는 방대한 양의 표본을 바탕으로 신분·계층별 과부의 재혼 실태를 수치화한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단편적인 부분을 넘어 관행을 관찰한 연구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호적에서 보이는 ‘술인’과 ‘술인녀’의 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울산지역의 재혼의 양상을 파악하고 관행과 그 변화를 추적했다.

‘술인’은 18세기 중반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구분했다. 또한 성별로 남성과 여성 술인이 가지는 성격의 차이를 확인했다. 18세기 중반 이전의 남성 술인은 예속·고용, 친족, 사실혼의 성격을 가졌다. 18세기 중반 이전의 여성 술인은 예속·고용, 이혼, 사실혼의 관계였다. 특히, 사실혼의 관계는 1729년부터 나타났는데, 이는 18세기 초반이 끝나갈 무렵부터 점차 여성 술인이 사실혼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했음을 확인했다.

18세기 중반 이전 ‘술인’의 자료를 종합해본다면 객식구의 성격이 강하다. ‘술인’이었던 사람이 장기적으로 호에 존속하는 사례는 전부 노비·고공으로 전환하여 명확한 호의 구성원이 되었다. 반대로 호주 또는 처의 친족이 ‘술인’으로 전환되는 사례는 잠시 몸을 위탁하거나 조만간 호에서 독립하는 경우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술인’ 중에 유계가 포함되어 있고, 후에 여성 술인이 구활비로 전환되는 사례는 호주 또는 처와 ‘술인’이 서로 면식이 없는 관계라는 점을 알려준다. 따라서 ‘술인’은 호의 구성원으로 적합하지 않는 인물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18세기 중반 이후의 남성 술인은 친족과 사실혼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18세기 중반 이전과 비교하면 사실혼의 관계에 사용된 남성 술인이 증가한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1792년 이후로 남성 술인은 호적대장에서 소멸했다. 이는 호적에서 여성 호주 대신에 남성 호주를 내세우는 호적 작성 원칙의 확립으로 인한 결과로 확인된다. 여성 술인은 18세기 중반부터 급증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때부터 여성 술인은 대부분 사실혼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대부분의 사실혼 여성이 ‘술인’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술인’에서 성별이 구분되어 여성 술인이 ‘술인녀’라는 독자적인 존재로 독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술인녀’는 1753년부터 그 존재가 확인된다. 여성 술인과 함께 수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성 술인과 ‘술인녀’는 서로 동일한 성격을 가졌지만, 여성 술인이 18세기 후반 이후로 소멸되는 것과 달리 ‘술인녀’는 그 이후에도 일정한 수를 유지했다. 이러한 사실들로 봤을 때, 울산호적에서는 여성 술인과 ‘술인녀’가 함께 기재되는 과도기의 기간을 거치고 18세기 후반에 술인녀가 사실혼의 여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여성 술인이 사실혼 관계였음을 확인한데 이어 ‘술인녀’는 재혼한 과부임을 확인했다. 먼저 남성이 호주로 있는 호에서의 ‘의자녀’는 여성의 재혼을 명백히 알려주는 단서이다. ‘술인녀’와 ‘의자녀’가 서로 친부모와 자식의 관계로서 같은 호에 존재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또한 ‘과부 호주와 남성 술인’호가 ‘홀아비 호주와 술인녀’로 전환되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술인녀가 재혼한 과부라고 명백히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울산호적에서 ‘술인녀’가 처로 전환하는 사례들은 술인녀로 존속하는 기간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어떠한 이유로 인해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술인녀가 처로 전환하는 원인은 확인했다. ‘술인녀’와 첩이 서로 전환되는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정식 아내의 위치에 있는 재혼 과부도 그보다 낮은 대우를 받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

했다. 이에 대응하여 ‘술인녀’는 전처 자식의 외조를 자신의 친부로 기재해 자신이 공식적인 처라고 표현했으며, 이는 술인녀가 생존해있을 때 그러한 경향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술인녀는 중인 이하 신분층 특히, 평민계층에서 압도적으로 사용되었다. 호적 작성의 주도층은 평민의 재혼 과부들을 ‘술인·술인녀’로 표현한 것이다. 평민들의 연령별 재혼의 양상도 확인했다. 남성은 60대에 재혼하는 인원이 가장 많았고, 여성은 40대 초반이 가장 많았다. 남성은 조세수취와 역의 징발대상으로 호주인 상태로 남아있었고, 여성은 장성한 아들의 호에서 어머니의 삶을 살아가는 사실을 확인했다.

‘술인·술인녀’를 통해 재혼가정의 구성원의 변화를 확인했다. 시기가 지날수록 ‘의자녀’ 기재와 ‘술인녀’의 친족들이 재혼가정에서 사라지는 것을 통해 남성 중심 사회를 지향하는 관행의 변화를 확인했다. 울산지역 평민 계층에도 부계 중심 사회의 성리학적 윤리관이 침투한 것이다.

‘술인·술인녀’는 양반층에서 나타난 관념의 변화를 보여준다. ‘술인·술인녀’라고 호적에 작성하는 주도층은 양반층이다. 양반층은 정조의식에 입각하여 과부의 재혼을 부도덕하게 여겼다. 그들은 정식 아내로 인정될 수 있는 ‘후처’를 소멸시키고 ‘술인·술인녀’를 기재하여 그들의 관념을 호적대장에 반영하고자 했다. 또한 양반들은 ‘술인·술인녀’의 사조정보를 은폐하는 행위를 통해 과부가 부도덕하다는 정조의식을 나타내려 했음을 확인했다.

평민층은 지속적으로 활발한 재혼 관행을 유지한 것으로 보아 정조의식의 침투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양반층은 자신이 과부와 재혼하는 경우는 과부라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 그들은 은폐하면서 과부와 실질적인 재혼을 했고, 자신들은 처로 기재하면서 평민계층은 술인녀로 기재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술인·술인녀’는 울산지역에서 성리학적 윤리관이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단서라고 말할 수 있다. 호적에는 당시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작성 주도층의 관념이 담겨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통계 수치를 활용한 1차원적인 관점에서 더 나아가 변화의 맥락을 살펴보는 고차원적인 관점이 요구될 것이다.

아직 울산호적은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모든 술인녀가 포함하지 못했다. 이후에 19세기의 술인녀도 포함하여 또한 술인녀는 평민계층에서 확인되는 용어이므로 다른 계층의 재혼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양반층의 재혼을 확인하는 연구는 향후 과제로 돌리겠다.

## 《참고문헌》

### 1. 사료

『(甲午式)戶籍事目』  
『經國大典』  
『高宗實錄』  
『成宗實錄』  
『審理錄』  
『燕山君日記』  
『英祖實錄』  
『蔚山府戶籍大帳』  
『典錄通考』  
『中宗實錄』  
『丹城縣戶籍大帳』

### 2. 논문

- 권내현, 「기획 : 단성호적의 사료적 성격 ; 조선후기 호적의 작성과정에 대한 분석」, 『대동문화연구』 3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1.
- \_\_\_\_\_, 「조선후기 동성촌락 구성원의 통혼 양상-단성현 신등면 안동권씨 사례-」, 『한국사연구』 132, 2006.
- 김건태,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인구기재 양상 - 단성호적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45, 한국역사연구회, 2002
- \_\_\_\_\_, 「18세기 초혼과 재혼의 사회사: 단성호적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1, 한국역사연구회, 2004.
- \_\_\_\_\_, 「18~19세기 제주도 여성의 결혼과 출산」 『대동문화연구』 65, 2009.
- Kim, K. t., 「Differing patterns of marriage between a city and villages in 18th century Korea: The case of Taegu Area」 『The history of the family』 14, 2009.
- 김경란, 「조선후기 『단성현호적대장』의 여성과악실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김기형, 「구비설화에 나타난 과부의 형상과 의미」, 『한국민속학』, 한국민속학회, 1996.
- 김상조, 「조선후기 야담에 나타난 재가의 양상과 의미」, 『한문학논집』, 근연한문학회, 1986.
- 박남훈, 「조선전기의 재혼금지법과 실제」, 『한국의 사회와 역사』, 최재석 정년기념논문총간행위원회, 1991.
- 박정혜, 「「덴동어미 화전가」에 나타난 혼인 및 개가의식 연구」, 『새국어교육』 55, 한국국어교육회, 1998.
- 손병규, 「18·19세기 단성호적 가족복원을 통한 혼인·출산의 계층성 분석」, 『한국문화』 6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4.
- 손정희, 「상녀재가형 야담 연구」, 『문화전통논집』,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6.

이남희, 「『안동권씨성화보』를 통해 본 조선 초기 여성의 재가」, 『조선시대사학보』, 조선시대사학회, 2011.

이상백, 「재가금지습속의 유래에 대한 연구」, 『조선문화사연구논고』, 을유문화사, 1948.

이성임, 「조선 후기 동성촌락 구성원의 혼인관계 -단성현 범물야면 상산김씨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32, 고려사학회, 2008.

이숙인, 「15세기 조선의 개가 논쟁」, 『동양철학』, 한국동양철학회, 2009.

이영훈, 「18~19세기 노비 세습원리의 변화 ; 강원도 원주목 양반가의 사례분석」, 『한국중세사논총』, 논총간행위원회, 2000.

이종서, 「‘전통적’ 계모관(繼母觀)의 형성과정과 그 의미」, 『역사와현실』 51, 한국역사연구회, 2004.

이준구, 「대한제국기 도한의 호구 양상과 사회,경제적 처지」, 『대구사학』, 대구사학회, 2008.

장경준, 「조선후기 호적대장과 호의 성격」,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정지영, 「조선후기 과부의 수절과 재혼: 『경상도단성현호적대장』에서 찾은 과부들의 삶」, 『고문서연구』 18, 2000.

최윤진, 「조식·김주 무고사건과 재가녀소생 관직제한법」, 『전북사학』, 전북사학회, 2011.

### 3. 저서

김두현,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9.

샤를르 달레 원작, 안응렬·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上)』, 한국교회사연구소, 1990.

성범중 역주, 『(국역)학성지』, 울산 : 울산남구 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2010.

에른스트 폰 헤세 바르텍 원작, 정현규 역주, 『조선, 1894년 여름: 오스트리아인 헤세-바르텍의 여행기』, 책과함께, 2012

울산박물관, 『학성 이씨 현령공파 기증 고문서』, 2013

이종서, 『고려·조선의 친족용어와 혈연의식-친족관계의 정형과 변동』, 신구문화사, 2009.

이준구, 『조선후기 신분직역변동연구』, 일조각, 1993.

이혜순·김경미, 『한국의 열녀전』, 도서출판 월인, 2002.

장병인, 『법과 풍속으로 본 조선 여성의 삶』, (주)휴머니스트, 2018.

정지영, 『질서의 구축과 균열: 조선후기 호적과 여성들』, 서강대학교출판부, 2015.

### 4. 사이트

구) 규장각 원문검색 서비스(<http://kyujanggak.snu.ac.kr/home>)

신) 규장각 원문검색 서비스(<http://kyudb.snu.ac.kr/main.do>)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ABSTRACT>

A Study on ‘Solin(率人) · Solinnyeo(率人女)’ in Ulsan  
Area in the Late Joseon Dynasty  
- Focusing on Widow's Remarriage Case -

Hwang Jin-seop

Department of Korea History and Korea Culture  
Graduate School  
Ulsan University

Neo-Confucianism that had influences on the Joseon society placed importance on widows' remaining chaste. King Seongjong enacted "Act on the Restriction of Remarriage," which prevented descendants of remarried widows from holding a government office. The act was discussed again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sangun, who refused to revise the act according to the opinion that the late king's decisions must be kept intact despite appeals to allow remarriage.

Negative perceptions of widows' remarriage started to emerge in the upper class in the society and spread to the lower class over time. As commoners copied the ideas and acts of noblemen, the custom of tabooing the remarriage of a widow settled down across the society. Commoner widows, however, got remarried for various reasons as they needed a new husband that was capable of economic activities and would protect them from external risks in order to survive.

Early studies on the remarriage of widows during Joseon focused on examining the reality of remarriage among noble widows by interpreting the enactment process of "Act on the Restriction of Remarriage" in the former half of Joseon and the provisions of "Gyeonggukdaejeon." Studies on commoner widows began in the early 2000s as researchers obtained access to data about commoners following the computerization of family registers. There are "Sorins" and "Sorinnyeos" related to widows in the "Census Register of Ulsan-bu" currently under the process of computerization.

Before the middle 18th century, male Sorins had the nature of subordination & employment, relative, and common law marriage. Female Sorins had the nature of subordination & employment, divorce, and common law marriage. Male Sorins were found in 1672~1708, but their records were missing between 1708 and the middle 18th century. Female Sorins began to rise in numbers in 1729 and increasingly focused on common law marriage relations.

When the data of "Sorins" before the middle 18th century was put together, it seems that Sorins had the strong nature of a dependent other than a member of one's own family. In cases where "Sorins" remained in a household for a long term, all of them were converted into servants and farmhands and became definite members of the household. In other cases where relatives of the head of household or wife were converted into "Sorins," they referred themselves to the household or would soon become independent from the household. In the last cases where "Sorins" included Yugaes with female Sorins converted into Guhwalbis later, they were not acquainted with the head of family or wife. These findings raise a high possibility that "Sorins" were not fit to be members of a household.

The term, male Sorins, was used to indicate relatives and common law marriage since the middle 18th century. There was an increase to the number of male Sorins used in common law marriage relations from the period before the middle 18th century. Female Sorins made a rapid increase in the middle 18th century, and most of them were used to indicate common law marriage relations. Male Sorins disappeared from the census register in 1792, and their female counterparts did in 1789. The extinction of male Sorins was an outcome of the government's efforts as it preferred the head of household being recorded as male. The extinction of female Sorins happened as their role was transferred to "Sorinnyeos."

The term "Sorinnyeos" was first found in 1753. Its records surged along with the number of female Sorins, who had the same nature as "Sorinnyeos." Unlike female Sorins that disappeared in the latter part of the 18th century, "Sorinnyeos" maintained a certain number since then, which suggests that the principle of using only "Sorinnyeos" in records settled down after the mixed use of female Sorins and "Sorinnyeos."

"Sorinnyeos" recorded in common law marriage relations were remarried widows. There were cases in which "Sorinnyeos" and "Uijanyeos" lived in the same household as mothers and their daughters. In other cases, "widow heads of household and male Sorins" were converted into "widower heads of household and Sorinnyeos." These findings show that widows were recorded as "Sorinnyeos" rather than wives after remarriage. There were, however, cases in which "Sorinnyeos" were converted into wives. The fact that widows were recorded as wives means that their remarriage was recognized as official marriage.

The study examined cases in which "Sorinnyeos" were converted into wives and found that remarried widows remained as "Sorinnyeos" for different durations. The reason can be estimated from the cases in which "Sorinnyeos" and concubines were converted into each other. Concubines were not recognized as formal wives. When remarried widows belonged to the same category as concubines, they must have received lower treatments than formal wives despite their same position, which is demonstrated by the facts that a "Sorinnyeo" promoted her position as a wife by recording the maternal grandfather of the former wife's child as her father and that

the tendency was high when "Sorinnyeos" were alive.

The terms "Sorins and Sorinnyeos" were used overwhelmingly among the common people especially under the Jungin class. The main recorders of family registers wrote down remarried commoner widows as "Sorinnyeos." Given the fact that the term "Sorinnyeos" was used among the common people, the remarriage cases were the most in commoner men in their sixties and commoner women in their early forties. Men needed remarriage even in old age as they remained as heads of household for tax collection and labor requisition. Women were able to live as mothers in the households of their grown-up sons.

"Sorins and Sorinnyeos" also show changes to the members of remarried families. The records of Uijanyeos and relatives of Sorinnyeos disappeared in remarried families over time, which shows the changing practice oriented toward a male-dominant society. The Neo-Confucian ethical beliefs of a paternal line-centered society also penetrated into the common people of Ulsan.

The Neo-Confucian ethical beliefs also brought changes to the noblemen of Ulsan. The main recorders of "Sorins and Sorinnyeos" in family registers were noblemen, who tried to reflect the immoral idea of remarriage on the census register by extinguishing "second wives" recognized as formal wives and recordings "Sorinnyeos." They used Sorinnyeos as a tool to enlighten common people to have the chastity consciousness and propagate their own chastity consciousness. Despite these actions of noblemen, the common people continued to practice remarriage actively, which suggests that the chastity consciousness had not penetrated into the entire society yet in the early 19th century.

In short, "Sorins and Sorinnyeos" offer clues to figure out how much influence the Neo-Confucian ethical beliefs had on the society of Ulsan along with the timing and methods of their influence. The census register reflects the lifestyles of people those days and the ideas of main recorders, which raises a need to employ a high-dimensional perspective to examine the contexts of changes beyond the one-dimensional perspective based on statistical numbers in order to understand the life of the past and sympathize with it.

Keywords: widow, dependent other than a member of one's own family, Neo-Confucianism, Sorin, Sorinnyeo, female-centric family, Census Register of Ulsan-bu, Uijaneyo, remarriage, chastity consciousness, latter part of Joseon, commoner, second wife
--